

국립국어원 2021-01-21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873-01

국립국어원
정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박 석 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21-01-2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873-0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박 석 준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

2021년 12월 15일

연구책임자: 박석준(배재대학교)

연구 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석준
공동연구원 김용경, 김용현, 문정현, 송금숙
심지영, 윤지원, 이미향, 최은지
보조연구원 김세정, 김인경, 라경서, 박현경, 이문원
이수영, 전현숙, 정희연, 최유미, 최성렬

차 례

국문초록	i
영문초록	iii
용어정리	v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5
3. 사업 추진 체계	9
4. 사업 수행 방법	12
5. 기대 효과	14
II. 연구 내용	16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조사 및 분석	16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21
3.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및 단체심사 신청 방안 마련	47
4.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53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63
6.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98
7.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및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	102

Ⅲ. 공청회 및 자문	137
1. 중간보고회 자문	137
2. 공청회 의견	144
3. 최종보고회 자문	154
4. 최종 자문	158
5. 법률 자문	173
Ⅳ. 결론	186
1. 연구 결과 정리	186
2. 제언	187
[부록]	189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초 심사를 통과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수요가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1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66,395 명으로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은 총 515곳(학위과정 267곳, 비학위과정 248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증가하면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신규 등록 시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과 운영 방법에 따라 교과목별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교육 기관이 원래 제출한 계획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교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초 심사를 통과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최초 심사 제도와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재심사 제도에 대한 요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과 양성기관의 운영 현황, 그리고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하여 양성기관의 품질 관리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조사하고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개정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 및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을 설계하였다. 넷째, 교원양성기관평가, 공학인증제,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소속 교수, 한국어교육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기 재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초 심사 정비 및 재심사 제도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비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관리하는 예비 한국어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써의 역할 확대와 기관의 위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 재심사 제도

Englis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re-examination system that will be used to confirm eligibility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by conducting periodic evaluations on those institutions that have passed the initial screening.

Since the 2000s, as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creased,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also increased rapidly,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those who wanted to obtain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tarted to be established. As of November 2021,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 holders has soared to 66,395, and total of 515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267 degree courses and 248 non-degree courses- are in operation.

As the number of training institution is increasing, when a institution newly registers, the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creen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xamines whether each curriculum subject has suitable content and method for their educational goal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quality management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because once the initial screening is passed, there is no longer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manage whether the institution is provid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submitted or the teachers are

qualified or not. Accordingly, experts have raised the need for a re-examination system that can periodically evaluat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even after they passed the first screening, and consistently evaluate them in connection with the initial examination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have established a re-examination system for quality control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m, and similar cases related to re-exami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this, the following tasks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Firs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of reexamination system— were reviewed. Second, the current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both of degree course and non-degree course) were analyzed. Third, we designed a plan to delegate the authority of issuing certificates to undergraduate or graduate schools of universities, and also made plan of ‘group screening application’ for institutions operating Academic Credit Bank System. Fourth, the similar cases related to re-examination, such as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valuation, engineering certification system, and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were analyzed whether

they can be applied to the re-examin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Fifth, we conducted a survey related to the re-examination system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reviewed the opinions of professors at those institutio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ts. Sixth, the initial screening criteria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reorganized, regular re-examination criteria were prepared, and procedures and operation plan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examination system were desig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oposed a plan for reorganization of the initial exa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examination system that meets the purpose of operating a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secured objectivity,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rough the work of seeking ways to improve the screening system. This will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prospective Korean language teacher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rol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a central institution in managing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also improving the status and work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teache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xamination system,
re-examination system.

용어정리

1. 한국어교원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3. 학위과정

-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과 함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은행제가 포함됨.

4. 비학위과정

- 과정을 이수하여도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을 말하며 대학교 부속(부설) 한국어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모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이에 속함.

5. 최초 심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첫 진입 심사

6. 재심사

- 최초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주기적인 심사

7. 단체심사

- 개인의 자격 심사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단체로 심사를 요청하는 것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초 심사를 통과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음.



[그림 1] 연구의 목적

- 최초 심사 제도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 유지되기 위

해 갖추어야 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재심사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예비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음.

-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정기 재심사 기준 마련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연구
 -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련
 -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지침서 등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제도 구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공청회 개최 통한 현장 이해도 제고
 -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 연구 지원

1.2. 연구의 필요성

-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만들어짐.

-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수(누적)는 2006년 868명에서 2010년 5,543명, 2015년 23,232명, 2020년 57,438명이며, 평균 합격률은 95% 정도임.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은 2021년 현재 총 515개로 그 중 학위과정이 267개, 비학위과정이 248개임.
- 초창기 양성기관은 비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나 점차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
- 자격 제도 제정 초기에는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육성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학위과정이 크게 성행하였으나 점차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전문 인력이 양성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학위과정의 수요가 줄어들고 규모도 축소되었음.
 - 자격증 제도가 생긴 지 반 세대가 지난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에 대한 재심사 시행은 자격증 소지자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최초 심사를 통과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재심사 제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신규 등록 시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과 운영 방법에 따라 교과목별로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교육 기관이 원래 제출한 계획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움. 또한 해당 교육자의 자질과 교육성과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음. 즉, 최초 심사를 통과해 한국어

1) 2021년 11월 현재 66,39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교원 양성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이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양성기관의 품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거나 재부여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 심사 제도를 활용해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심사하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재심사 제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될 재심사 제도는 최초 심사 제도와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기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되,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기준과 규정이 연구되어야 함.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그 이유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업무 과부하와 자격증을 받아야 할 수요자의 불편함 해소의 필요성임. 특히 개인 자격증 발급은 전국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졸업생은 졸업장과 동시에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과 대비됨. 학위과정으로서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자격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본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종사자의 졸업 후 진로 준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경로를 적합하게 조정한다면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 실제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 재심사 제도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결과를 통한 후속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같이 새롭게 정비될 본 제도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제고와 품질 유지를 기본 목표로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임.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크게 세 가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으로 구성됨.

-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 비학위과정)의 현재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 2)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교원양성기관평가, 공학인증제,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국내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적용 가능한 내용 모색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정기 재심사 기준,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대학 및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등의 마련
-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지침서 등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공청회 개최,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 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세부 연구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상황,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기관별 과정별 운영 현황을 조사한 뒤 기관 재심사 제도를 정비할 때 구분에 따른 상세한 조건을 수립해야 함.
 - 대학과 대학원의 재심사 시 평가 기준 정립, 대학과 대학원의 자격증 발급 시 경로 조정 및 시스템 재구축, 학위과정의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 위임 관련 법률 확인 필요함.
 -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중 학위와 비학위과정만으

로 관리할 수 없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있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여부는 실제로 국가평생진흥원과 국립국어원 두 기관의 영향을 모두 받으므로 기관의 재심사 기준을 달리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증 단체 발급에 대한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분석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따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별로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이 지니는 교육적 측면과 심사 기준, 절차, 방식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사 자격제도의 양성기관의 재심사 사례를 조사 분석 후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기준 마련 및 구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정기 재심사 기준 마련

- 최초 심사 제도를 분석해 한계와 재심사 제도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보완하여 보다 진보된 최초 심사 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 정비된 최초 심사 제도의 개발 배경과 원칙에 따라 이와 연계된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여야 함.
 -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현행 제도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의 자격 심사를 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인증제를 포함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원)의 학위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향후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요함(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 45조).
 - 위임, 위탁 받은 교육기관(대학, 기관)의 정기적인 역량(진단)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련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의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모색
 -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지침서 등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제도 구축
-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운영 방법 제안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공청회 개최 통한 현장 이해도 제고

-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소속 교수,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최상의 재심사 제도 및 운영 방법을 개발하고 제안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연구
 - 재심사 기준(표) 마련 시 평가 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평가 대상 기관이 개선될 여지를 판단해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재심사 목표가 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적 제고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운영을 추진하는 데 타당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사업 추진 체계

- 본 연구의 참여 인력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어교육 전문가 및 한국어교육 전공자, 한국어교육기관 교강사 등으로 구성함.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해 온 전문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을 담당해 온 전문가 등 한국어교원 양성 전 분야와 영역의 전문가와 현장의 한국어교원 재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최초 심사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연구진으로 구성하였음.
 - 예비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양성 학과의 특성화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였음.

- 심사기관 및 피심사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였음.

○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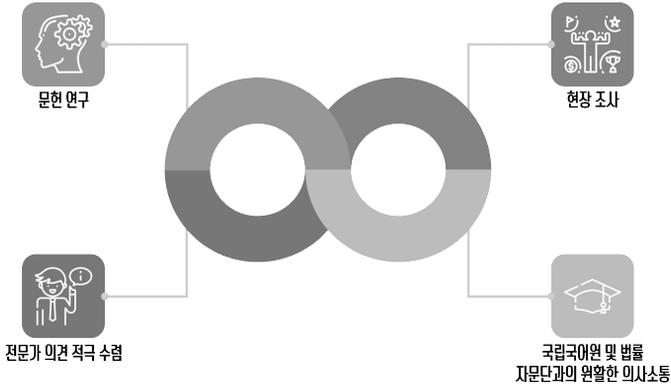
진행 내역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련 조사 및 연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분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제도 분석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및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	최초 심사 기준 정비(안) 도출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연구												
	재심사 제도(안) 도출												
	재심사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연구												
자격증 발급 위입 방안	자격증 발급 위입 유사 사례 조사												
	자격증 발급 위입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법적 사항 검토	법령 개정 관련 사항 검토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감수	법률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보고회 및 공청회	중간 보고회 개최												
	최종 보고회 개최												
	공청회 개최												
연구 완료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결과물 제출												

4. 사업 수행 방법

4.1. 사업 수행 접근 방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및 규정을 분석한 내용이 재심사 제도 개발 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안함.
- 최초 심사 제도와 재심사 제도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함.
- 개발된 (재)심사 제도가 실제 양성기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 장치가 필요한지 궁리하여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구조화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심사 제도 적용 방안을 특성화하되, 제도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최상의 방안을 제안함.
- 주관 기관이 선택 가능하도록 재심사 제도(안)을 다양하게 제시함.
- 제도 활용 및 적용에 대한 기술을 상세히 함으로써 개발된 재심사 제도가 각 양성기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게 하고자 함.

4.2. 세부 수행 방법



[그림 2] 세부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 관련 연구 분석 및 최초 심사 제도 분석, 양성기관 운영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개발의 이론적 기반 확인 → 절차, 세부 규정 등의 고안
-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운영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의 면밀한 분석 → 위임 절차 및 관리 방안, 단체 심사 신청 운영 방안, 관련 운영 지침 등의 고안

○ 현장 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현장 운영 실태의 전수 조사 → 현장의 요구 및 상황의 정확한 파악 → 재심사 제도(안) 도출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재심사 제도(안) 도출

○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소속 교수,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
-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 중간 점검 회의, 공청회, 최종 보고회 등

→ 다양한 의견의 적극 수렴 → 활용도 높은 최상의 제도(안) 도출

○ 국립국어원 및 법률 자문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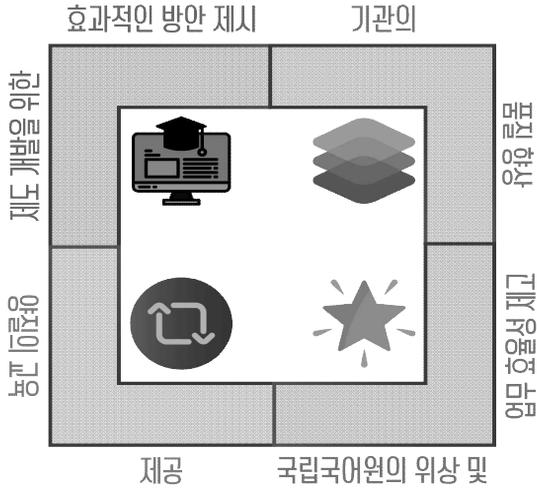
- 본 연구진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되, 세부 내용 조정 등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및 법률 자문단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 절차 시행

5. 기대 효과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초 심사 정비 및 재심사 제도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품질 향상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법령 및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예비

-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일조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관리하는 국립국어원이 예비 한국어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관의 위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그림 3] 기대 효과

II. 연구 내용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조사 및 분석

1.1.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의 당위성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대상을 명시함.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1.2. 국어기본법 시행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에 한국어교원의 개념 및 한국어

교육경력 인정 기관 및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을 해야 함을 명시함.

-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2에 영역별 과목 예시, 필수이수 학점, 필수이수시간 등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명확히 제시함.
- “대학 등”의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교원”이라 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자격의 등급(1급, 2급, 3급)을 달리함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

- 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함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음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 ① 영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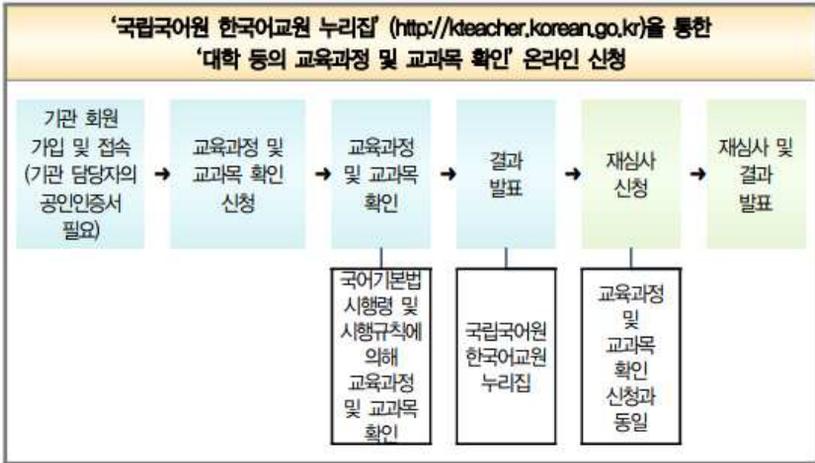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목별 강의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국어 교육과

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음.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교원 자격 관련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그림 4]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절차

- 이 결과는 개인 자격 부여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설계 시에 참고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희망자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교과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부적합 교육과정 및 교과목 재심사는 해당 회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 발표에 이어 바로 진행됨, 최초 판정의 부적합 사유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보완 후 신청함.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2.1.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

- 국어기본법 시행 후, 2006년 868명 취득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현재 누적 인원 66,39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표 1〉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 현황

연도		심사 신청자	1급 합격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률	학위과정별 분류		
									학위 (2/3급)	비학위 (3급)	경력 (1/2/3급)
	2차	218	-	60	62	122	96	55.96%	66	9	47
	총계	1,754	-	269	599	868	886	49.49%	346	148	374
2007년	1차	548	-	79	367	446	102	81.39%	100	273	73
	2차	242	-	106	87	193	49	79.75%	115	55	23
	총계	790	-	185	454	639	151	80.89%	215	328	96
2008년	1차	611	-	152	421	573	38	93.78%	167	365	41
	2차	299	-	189	80	269	30	89.97%	203	43	23
	총계	910	-	341	501	842	68	92.53%	370	408	64
2009년	1차	700	-	309	361	670	30	95.71%	330	322	18
	2차	390	-	304	63	367	23	94.10%	307	48	12
	총계	1,090	-	613	424	1,037	53	95.14%	637	370	30
2010년	1차	1,310	-	457	800	1,257	53	95.95%	496	738	23
	2차	422	-	339	64	403	19	95.50%	343	44	16
	3차	516	-	30	467	497	19	96.32%	31	462	4

연도		심사 신청자	1급 합격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률	학위과정별 분류		
									학위 (2/3급)	비학위 (3급)	경력 (1/2/3급)
	총계	2,248	-	826	1,331	2,157	91	95.95%	870	1,244	43
2011년	1차	684	-	548	99	647	37	94.59%	566	68	13
	2차	691	65	538	36	639	52	92.47%	422	15	202
	3차	546	16	69	439	524	22	95.97%	46	436	42
	총계	1,921	81	1,155	574	1,810	111	94.22%	1,034	519	257
2012년	1차	850	13	644	128	785	65	92.35%	659	101	25
	2차	719	21	593	60	674	45	93.74%	557	38	79
	3차	922	21	105	752	878	44	95.23%	71	741	66
	총계	2,491	55	1,342	940	2,337	154	93.82%	1,287	880	170
2013년	1차	1,167	8	1,009	88	1,105	62	94.69%	1,014	68	23
	2차	1,261	44	1,054	37	1,135	126	90.01%	1,022	21	92
	3차	950	22	176	701	899	51	94.63%	155	695	49
	총계	3,378	74	2,239	826	3,139	239	92.92%	2,191	784	164
2014년	1차	1,747	15	1,555	101	1,671	76	95.65%	1,560	75	36
	2차	2,090	56	1,891	39	1,986	104	95.02%	1,870	17	99
	3차	997	30	205	674	909	88	91.17%	189	666	54

연도		심사 신청자	1급 합격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률	학위과정별 분류		
									학위 (2/3급)	비학위 (3급)	경력 (1/2/3급)
	총계	4,834	101	3,651	814	4,566	268	94.46%	3,619	758	189
2015년	1차	1,961	34	1,714	104	1,852	109	94.44%	1,712	76	64
	2차	2,609	91	2,361	99	2,551	58	97.78%	2,358	25	168
	3차	1,506	50	203	1,181	1,434	72	95.15%	172	1,170	91
	총계	6,076	175	4,278	1,384	5,837	239	96.07%	4,243	1,271	323
2016년	1차	2,406	39	2,146	154	2,339	67	97.22%	2,174	78	87
	2차	2,833	102	2,591	57	2,750	83	97.07%	2,580	30	140
	3차	1,065	139	175	699	1,013	52	95.12%	146	693	174
	총계	6,304	280	4,912	910	6,102	202	96.80%	4,900	801	401
2017년	1차	2,377	69	2,133	125	2,327	50	97.90%	2,163	68	96
	2차	2,956	168	2,653	58	2,879	77	97.40%	2,622	26	231
	3차	1,078	119	197	689	1,005	73	93.23%	172	677	156
	총계	6,411	356	4,983	872	6,211	200	96.88%	4,957	771	483
2018년	1차	2,407	140	2,096	116	2,352	55	97.71%	2,058	88	206
	2차	3,344	211	2,995	61	3,267	77	97.70%	2,973	27	267
	3차	1,109	138	238	690	1,066	43	96.12%	220	680	166

연도		심사 신청자	1급 합격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률	학위과정별 분류		
									학위 (2/3급)	비학위 (3급)	경력 (1/2/3급)
	총계	6,860	489	5,329	867	6,685	175	97.45%	5,251	795	639
2019년	1차	2,803	152	2,469	125	2,746	57	97.97%	2,468	74	204
	2차	3,850	210	3,520	58	3,788	62	98.39%	3,515	17	256
	3차	1,362	94	247	979	1,320	42	96.92%	229	977	114
	총계	8,015	456	6,236	1,162	7,854	161	97.99%	6,212	1,068	574
2020년	1차	3,124	132	2,827	101	3,060	64	97.95%	2,829	69	162
	2차	4,372	251	3,990	53	4,294	78	98.22%	3,982	35	277
	3차	1,203	114	264	747	1,125	78	93.52%	248	741	136
	총계	8,699	497	7,081	901	8,479	220	96.56%	7,059	845	575
2021년	1차	3,568	174	3,157	166	3,497	71	98.01%	3,172	120	205
	2차	4,428	220	4,067	48	4,335	93	97.90%	4,062	15	258
	총계	7,996	394	7,224	214	7,832	164	97.95%	7,234	135	463
합계		69,777	2,958	50,664	12,773	66,395	3,382	95.15%	50,425	11,125	4,845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결과(2021년 2차 기준) 2021.12.16.]

2.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실태

-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 여부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국립국어원 자료 수령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홈페이지 조사	설문조사
국립국어원	교육과정 연구팀	심사제도 연구팀	심사제도 연구팀

[그림 5]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조사 절차

-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위과정)

지역	운영	미운영	폐지	합계
서울	68	11	6	85
경기·인천	24	5	1	30
강원	6	1	1	8
충청	39	1	9	49
경북	19	0	5	24
경남	19	2	0	21
전라·제주	33	2	4	39
합계	208	22	26	256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부)

지역	운영	미운영	폐지	합계
서울	13	2	1	16
경기·인천	3	0	0	3
강원	1	1	1	3
충청	13	0	5	18
경북	7	0	3	10
경남	5	0	0	5
전라·제주	12	0	3	15
합계	54	3	13	70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4>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대학원)

지역	운영	미운영	폐지	합계
서울	42	1	0	43
경기·인천	16	0	0	16
강원	5	0	0	5
충청	22	0	3	25
경북	8	0	0	8
경남	11	2	0	13
전라·제주	20	1	1	22
합계	124	4	4	132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점은행제)

지역	운영	미운영	폐지	합계
서울	13	8	5	26
경기·인천	5	5	1	11
강원	0	0	0	0
충청	4	1	1	6
경북	4	0	2	6
경남	3	0	0	3
전라·제주	1	1	0	2
합계	30	15	9	54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6>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비학위과정)

지역	운영	미운영	폐지	합계
서울	27	64	16	107
경기·인천	5	27	9	41
강원	0	4	3	7
충청	2	30	9	41
경북	1	10	3	14
경남	0	33	5	38
전라·제주	1	17	8	26
합계	36	185	53	274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2) 지역 대표 기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교과목 운영 현황

- 조사 시기: 2021. 3. 3.(수) ~ 3. 5.(금)
- 학위과정 운영 기관 학부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5개 지역의 1개 기관을 중심으로 교과목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음.

<표 7> 학위과정별 교과목 운영 현황

연번	기관	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 수(개)	영역 구분	영역별 과목 개수
1	A	학부	29	1영역	3
				2영역	5
				3영역	13
				4영역	6
				5영역	2
		일반	44	1영역	10

연번	기관	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 수(개)	영역 구분	영역별 과목 개수			
2	B	대학원	40	2영역	10			
				3영역	19			
				4영역	3			
				5영역	2			
				1영역	7			
		교육 대학원		2영역	7			
				3영역	19			
				4영역	4			
				5영역	3			
				1영역	7			
		3		C	학부	80	2영역	5
							3영역	12
							4영역	9
							5영역	3
1영역	7							
일반 대학원	2영역		17					
	3영역		43					
	4영역		10					
	5영역		3					
	1영역		9					
3	C		학부		24		2영역	4
							3영역	3
							4영역	11
							5영역	4
		1영역		2				
		일반 대학원	2영역	3				
			3영역	2				
			1영역	3				
			2영역	2				
			19	3영역	9			

연번	기관	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 수(개)	영역 구분	영역별 과목 개수		
4	D	학부	57	4영역	3		
				5영역	2		
				1영역	8		
				2영역	4		
				3영역	24		
				4영역	13		
		5영역	8				
		일반 대학원	41	1영역	4		
				2영역	3		
				3영역	22		
				4영역	10		
		5영역	2				
		5	E	학부	58	1영역	17
						2영역	5
3영역	19						
4영역	15						
5영역	2						
일반 대학원	58			1영역	6		
				2영역	6		
				3영역	35		
				4영역	3		
				5영역	8		
교육 대학원	40			1영역	6		
				2영역	6		
				3영역	21		
				4영역	3		
		5영역	4				

*홈페이지 참고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실제 학기별 운영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대학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A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29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3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3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6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44개 과목 중 1명역인 한국어학에 10개, 2명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10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9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3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40개 교과목 중 1명역인 한국어학에 7개, 2명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7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9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4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3개 과목이 있었음.

- A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학부 과정보다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과목 개수가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보아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B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36개 과목 중 1명역인 한국어학에 7개, 2명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2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9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3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80개 과목 중 1명역인 한국어학에 7개, 2명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17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43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10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3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30개 과목 중 1명역인 한국어학에 9개, 2명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4개, 3명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8개, 4명역인 한국문화에 5개, 5명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B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

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A기관과 동일하게 학부과정보다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과목 개수가 다양하고 많았음.

- C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24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4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3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1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4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19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3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2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9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C기관도 A와 B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인 심화과정이 있으나 교과목 개수를 비교해 보면 5개 영역 학부과정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교육대학원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 D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57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8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4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4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8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41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4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3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2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0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D기관도 C기관과 동일하게 학부, 일반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에 비해서 심화인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과목의 다양성과 개수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남.

- E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58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17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9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5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58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6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6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35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8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58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6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6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1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4개 과목이 있었음. E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교과목 개수는 동일한데 반해 학부과정은 영역별로 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편이며, 일반대학원의 경우 3영역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을 보임. 또한 교육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의 과정에 비해 간소한 교과목 개수로 이 역시 3영역에 집중해 편성되어 있음.

○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표 8> 비학위과정 및 학점 은행 과정 운영 현황

연번	기관	운영 여부		과목 수(개)	지역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1	A	O	X	25	서울
2	B	X	X	-	대전
3	C	X	X	-	광주
4	D	X	X	-	대구
5	E	O	X	27	부산

*홈페이지 참고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실제 학기별 운영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비학위과정의 경우 A기관~E기관 총 5개 기관 중 서울 소재의 기관과 부산 소재의 기관에서만 비학위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비학위과정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A기관은 25개 교과목을 E기관은 27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5개 기관 모두 학점은행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표 9〉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학점은행제) 교과목 수

연번	기관	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 수(개)	영역 구분	영역별 과목 수
1	A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5	1영역	6
				2영역	3
				3영역	12
				4영역	3
				5영역	1
2	B	-			
3	C	-			
4	D	-			
5	E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7	1영역	6
				2영역	4
				3영역	12
				4영역	3
				5영역	2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으로 학기마다 실제로 개설되어 운영된 것과 상이할 수 있음.

- 비학위과정 및 학점은행제 교과목 수 현황을 살펴보면, A기관의 경우대학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A기관은 25개 과목, E기관은 27개 과목으로 A기관 B기관 모두 학위과정에 비학위과정의 교과목이 간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장 많은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교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설문을 통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 설문 방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제도의 수정 및 재심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 유형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배포하면서 기관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음.

○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귀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교원자격 과목 담당 교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교원자격 과목 담당 교원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귀 기관의 4년간 입학 정원은 몇 명입니까?
- 귀 기관의 4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수는 몇 명입니까?
- 귀 기관에서는 졸업생(수료생)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귀 기관의 교과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귀 기관은 몇 학기 주기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수강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 다음 중 귀 기관에서 채택한 실습수업의 현장 경험은 무엇입니까?
- 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습 기관으로 활용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적합 판정 후, 귀 기관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설문 결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내용만 정리하고자 함.

(1) 수업 운영 방식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온라인	8(12.7)	3(18.75)	2(10.53)
② 오프라인	40(63.5)	6(37.5)	11(57.89)
③ 온·오프라인	13(20.6)	6(37.5)	5(26.32)
④ 기타	2(3.2)	1(6.25)	1(5.26)
합계	48(100)	9(100)	13(100)

⇒ 세 유형의 기관 모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2) 전임교원 수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인 교원은 1명~13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전임교원은 대부분의 기관이 0명이었으며 1명, 또는 4명이 소속된 곳이 있었음.
- 비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인 교원은 0명~17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1명, 2명, 3명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많았고 외국인 교원은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음. 비전임교원을 직위에 따라 정리하면 시간강사가 소속된 기관이 가장 많았음.

〈전임교원〉

한국인교원	N(%)	외국인교원	N(%)
1명	9(16.98)	0명	50(94.34)
2명	5(9.43)	1명	2(3.77)
3명	14(26.42)	4명	1(1.89)
4명	2(3.77)		
5명	8(15.09)		
6명	4(7.55)		
7명	5(9.43)		
9명	2(3.77)		
10명	1(1.89)		
11명	2(3.77)		
13명	1(1.89)		

〈비전임교원〉

한국인교원	N(%)	외국인교원	N(%)
0명	1(3.70)	0명	26(96.30)
1명	5(18.52)	5명	1(3.70)
2명	5(18.52)		
3명	5(18.52)		
4명	1(3.70)		
5명	3(11.11)		
6명	1(3.70)		
7명	1(3.70)		
8명	1(3.70)		
10명	1(3.70)		
14명	1(3.70)		
15명	1(3.70)		
17명	1(3.70)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전임교원은 1명인 곳이 가장 많

왔고, 외국인 전임교원은 모든 기관에 한 명도 없었음.

<전임교원>

한국인교원	N(%)	외국인교원	N(%)
1명	8(80.0)	0명	15(100.0)
2명	1(10.0)		
3명	1(10.0)		

<비전임교원>

한국인교원	N(%)	외국인교원	N(%)
1명	1(11.11)	0명	9(100.0)
3명	4(44.44)		
4명	1(11.11)		
25명	1(11.11)		
29명	1(11.11)		
39명	1(11.11)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기관의 전임교원은 기관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담당 교원이 있었으며 비전임교원 역시 최소 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었음.

(3) 자격증 소지자 교원 수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소속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를 확인해 보니 자격증 미소지가 과반 수 이상이었음.

〈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0명	27(51.92)	0명	33(52.38)	0명	44(69.84)
1명	18(34.61)	1명	19(30.15)	1명	12(19.04)
2명	4(7.69)	2명	6(9.52)	2명	2(3.17)
3명	1(1.92)	3명	3(4.76)	3명	3(4.76)
5명	1(1.92)	6명	1(1.58)	4명	1(1.58)
기타	1(1.92)	기타	1(1.58)	기타	1(1.58)

〈비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0명	22(35.48)	0명	32(50.79)	0명	52(82.53)
1명	19(30.64)	1명	11(17.46)	1명	7(11.11)
2명	11(17.74)	2명	6(9.52)	2명	2(3.17)
3명	8(12.90)	3명	6(9.52)	3명	1(1.58)
4명	1(1.61)	4명	2(3.17)	기타	1(1.58)
10명	1(1.61)	5명	2(3.17)		
		10명	2(3.17)		
		14명	1(1.58)		
		기타	1(1.58)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0명	10(66.67)	0명	11(73.33)	0명	12(80.0)
1명	3(20.0)	1명	2(13.33)	1명	1(6.67)
기타	2(13.33)	기타	2(13.33)	기타	2(13.33)

〈비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0명	1(6.25)	0명	6(37.5)	0명	11(68.75)
1명	5(31.25)	1명	1(6.25)	1명	3(18.75)

2명	1(6.25)	2명	3(18.75)	기타	2(12.50)
3명	2(12.50)	7명	1(6.25)		
4명	1(6.25)	10명	1(6.25)		
5명	1(6.25)	14명	1(6.25)		
14명	1(6.25)	15명	1(6.25)		
18명	1(6.25)	기타	2(12.50)		
19명	1(6.25)				
기타	2(12.50)				

- 기타에 대한 의견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가 있음.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소속 교원은 그 수도 적지만, 자격증 소지자 역시 많지 않음.

<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1명	2(66.67)	0명	2(66.67)	0명	3(100.0)
2명	1(33.33)	1명	1(33.33)		

<비전임교원>

1급	N(%)	2급	N(%)	3급	N(%)
0명	1(25.0)	0명	3(75.0)	0명	2(50.0)
1명	2(50.0)	5명	1(25.0)	2명	2(50.0)
6명	1(25.0)				

(4) 담당 교원의 전공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학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전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

<전임교원>

학위	전공	N(%)	전공	N(%)	전공	N(%)
박사	고전문학	20(8.55)	문화인류학	1(0.43)	의미론	1(0.43)
	고전시가	1(0.43)	비교문학	1(0.43)	의사소통교육학	1(0.43)
	교육과정론	1(0.43)	사회복지학	2(0.85)	인지심리학	1(0.43)
	교육학	2(0.85)	사회학	1(0.43)	중어중문학	1(0.43)
	국어교육학	16(6.84)	아동복지학	3(1.28)	초등국어교육	1(0.43)
	국어국문학	18(7.69)	언어학	5(2.14)	통사론	3(1.28)
	국어문법론	1(0.43)	역사학	1(0.43)	한국어교육학	50(21.37)
	국어사	1(0.43)	영미희곡	1(0.43)	한국학	1(0.43)
	국어음운론	1(0.43)	영어교육학	2(0.85)	한문학	1(0.43)
	국어학	51(21.79)	영어영문학	2(0.85)	현대문학	26(11.11)
	기타국문학	1(0.43)	유아문화교육	1(0.43)	현대소설	2(0.85)
	대조언어학	1(0.43)	유아교육	1(0.43)	현대시	2(0.85)
	말뭉치언어학	1(0.43)	음성음운론	1(0.43)		
	문법교육학	1(0.43)	음운론	1(0.43)		
	문예창작	2(0.85)	응용언어학	1(0.43)		
석사	한국어교육	1(0.43)				
학사	한국어교육	1(0.43)				

<비전임교원>

학위	전공	N(%)	전공	N(%)	전공	N(%)
박사	고전문학	5(2.73)	다문화교육학	1(0.55)	중어중문학	2(1.09)
	교육학	4(2.19)	문학	1(0.55)	청소년지도학	1(0.55)
	국문학	2(1.09)	사회복지학	1(0.55)	한국어교육학	87(47.54)
	국어문학	2(1.09)	사회언어학	1(0.55)	한국어언어문화학	2(1.09)
	국어어휘론	1(0.55)	언론학	1(0.55)	한국학	1(0.55)
	국어학	27(14.75)	역사학	1(0.55)	현대문학	5(2.73)
	국제학	1(0.55)	영어학	1(0.55)		

	국제한국어문화학	1(0.55)	음운론	1(0.55)		
박사 수료	국어교육학	1(0.55)	언어학	1(0.55)	한국어교육학	14(7.65)
	국어학	2(1.09)	철학	1(0.55)		
석사	국문학	1(0.55)	불어학	1(0.55)	한국어교육학	6(3.28)
	국어교육학	1(0.55)	사회학	1(0.55)	현대문학	1(0.55)
	국어학	3(1.64)	예술행정학	1(0.55)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담당 교수의 전공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학위	전공	N(%)
박사	국어국문학	1(16.67)
	불어불문	1(16.67)
	한국어교육학	3(50.0)
박사 수료	한국어교육학	1(16.67)

<비전임교원>

학위	전공	N(%)	전공	N(%)
박사	고전문학	1(0.87)	외국어교육학	1(0.87)
	국어국문학	15(13.04)	한국어교육학	15(13.04)
	국어학	4(3.48)	한국학	2(1.74)
	다문화학	1(0.87)	현대문학	1(0.87)
	언어학	1(0.87)		
박사 수료	국어국문학	6(5.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	1(0.87)
	국어교육학	2(1.74)	한국어교육학	19(16.52)
	국어학	1(0.87)		
석사	교육학	3(2.61)	한국어교육학	32(27.83)
	국어국문학	9(7.83)	한국어문	1(0.87)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담당 교수의 전공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학위	전공	N(%)
박사	교육학	1(8.36)
	한국어교육학	2(0.41)
박사 수료	한국어교육학	1(0.41)
석사	한국어교육학	1(0.41)

<비전임교원>

학위	전공	N(%)	전공	N(%)	전공	N(%)
박사	고전문학	2(3.33)	독어독문학	1(1.67)	한국어교육학	10(16.67)
	국사학	1(1.67)	언어교육	1(1.67)	한국어협동과정	1(1.67)
	국어교육	2(3.33)	언어학	6(10.0)	한일비교문학	1(1.67)
	국어국문학	9(15.0)	음악학	1(1.67)	현대문학	2(3.33)
	국어음성학	1(1.67)	인류학	1(1.67)		
	국어학	6(10.0)	한국문화	1(1.67)		
박사 수료	국어학	1(1.67)	한국어 교육학	7(11.67)		
석사	일어일문학	1(1.67)	한국어 교육학	2(3.33)	한국언어문화	1(1.67)
학사	한국어문화	2(3.33)				

(5) 졸업생(수료생)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 관리

- 졸업생(수료생)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 관리 여부에 대한 문항에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은 27개(42.85%)가 관리하며, 비학위과정은 9개(47.37%)가 관리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음.

구분	N(%)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비학위과정
① 관리한다	27(42.85)	9(47.37)
② 관리하지 않는다	29(46.03)	7(36.84)
③ 잘 모르겠다	7(11.11)	3(15.79)
합계	63(100)	19(100)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강의계획서만 보고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강의계획서와 교과목과의 연관성 기준이 모호함’, ‘교원 수’, ‘심사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세밀한 기준 및 지침의 모호성’, ‘서류 작성 절차’ 등이 있음.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심사 시기로 인해 학사일정의 문제 생길 가능성 있음’, ‘국가평생교육원과의 과목 연계’, ‘전문 강사 확보’, ‘심사 이력 및 사유 확인이 불편함’ 등이 있음.

다. 비학위과정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제출 서류가 너무 많으며, 교과목명 일치와 영역 혼재’,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강의계획서 상 문구로 심사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절차 복잡’ 등이 있음.

(7)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적합 판정 후,
교육과정 관리

-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합 판정 후 교육과정 관리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국어원에 심사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가 61.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 은행제	
① 적합 판정 후 변경 없이 동일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23(37.09)	8(50)	11(57.89)
②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 을 통해 국어원에 심사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38(61.29)	6(37.6)	5(26.32)
③ 잘 모르겠다	1(1.61)	1(6.25)	3(15.79)

3.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및 단체심사 신청 방안 마련

3.1.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1) 개요 및 현황

- 현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에서 대학(원)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요함(관련법령: 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 45조).
- 입학 시점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되,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 수강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자격증 발급 권한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위임하고 우수한 기관은 실습 관련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함.
- 수강생의 졸업 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를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청자, 대학(원) 등의 학위 양성기관, 국립국어원 등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함.

2)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안)

신청자	대학(원) 등 학위 양성기관	국립국어원	대학(원) 학위 양성기관	
① 자격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③ 한국어교원 양성 위원회 심의	④ 자격증 발급명단 확인 및 자격 승인	⑤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자격 검정신청 서 전공이수 학점인정 서 성적증명 서 주민등록 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자격 검정신청 서 확인 전공이수 과목 확인 자격증 신청자 명단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자격 심의 이의 제기 재심의 국립국어 원으로 명단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발급명단 최종 확인 및 자격 승인/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격 증 인쇄 자 격 증 수여
학위 수여식 2개월 전 (12월, 6월)	학위 수여식 2개월 전 (1월, 7월)	학위 수여식 1개월 전 (1월, 7월)	학위 수여식 1개월 전 (1월, 7월)	학위수여식 (2월, 8월)

① 자격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시기: 학위 수여식 2개월 전(12월, 6월)
- 대상: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제출 서류: 교원자격검정신청서, 전공이수학점인정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서

협 6급 증명서)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 시기: 학위 수여식 2개월 전(1월, 7월)
 - 대학(원) 양성기관은²⁾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 적합 여부(학적 사항), 서류 미비 여부 등을 확인³⁾
 - 대학(원) 양성기관은 전공과목 이수(필수학점, 기본이수 학점), 성적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합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대학(원) 양성기관은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증 신청자 명단 작성
 - 주임(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최종 확정
- ③ 한국어교원 양성 위원회 심의
 - 시기: 학위 수여식 1개월 전(1월, 7월)
 - 대학(원) 양성기관 내에 학과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원 양성위원회 설치⁴⁾
 - 한국어교원 양성위원회에서 졸업 사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 최종 심의
 - 이의신청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재심 논의
 - 심사내역표, 교원자격증 발급 대장 작성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련학과, 행정부서에서 지정할 수 있음.

3) 향후,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은 웹상에서 한국어교원자격검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위원장, 위원, 임기, 직능 등의 세부내용은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함(교원자격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④ 국립국어원의 최종 자격증 발급 명단 확인 및 자격 승인

- 시기: 학위 수여식 1개월 전(1월, 7월)
- 대학에서 송부한 최종 발급명단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
- 대학(원) 양성기관에 자격 승인 통보

⑤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 시기: 학위 수여식(2월, 8월)
- 해당 대학(원) 양성기관의 총장 명의로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⁵⁾
- 한국어교원자격검정 통과자에 한해 학위수여식 당일 학위증과 함께 배부
- 한국어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명단 확인 및 수강생 수여 확인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절차 개선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 최종 졸업 사정에서 졸업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기에 대학에서 졸업 사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거나 신청했다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2.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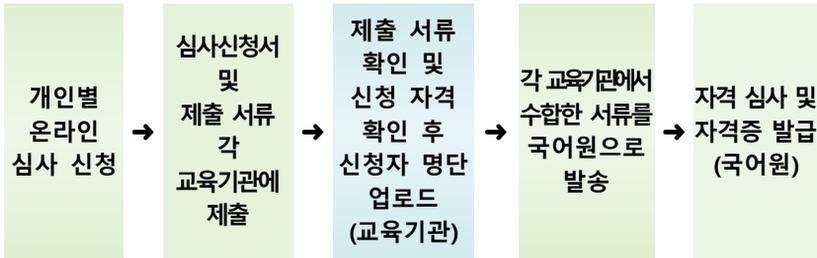
1) 추진(안)

- 현재 심사 신청 후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학위과정(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수합하여 단체 접수하는 방안으로 전환 예정
- 기관 담당자가 예비 검토한 결과와 단체 접수 명단을 업

5) 현재 교원자격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함.

로드하고 이를 개인 신청자의 자격 심사 신청 내역과 연동하는 기능 개발 필요

2) 단체 접수 진행 절차



- 교육기관에서 미비 서류 및 자격 요건 미충족자 예비 검토
- 신청자 명단 등록 및 제출 서류 일괄 발송

3) 개발 필요 기능

- (기관 담당자) 단체 접수 신청자 명단 업로드
- (관리자) 단체 접수된 신청자의 서류 접수 여부를 개인 심사 신청 내역과 연동하여 접수 완료 처리

4) 법률 자문 결과

- 한국어교원 발급 신청 서류를 개인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꿀 때, 현행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이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한국어교원 발급 신

청 서류를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렇게 명문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있는 처리절차 도표에 '기관'을 넣으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음.⁶⁾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주체를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제1항과 제2항),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제3항)으로 규정함. 시행규칙 제6조는 이미 한국어교원 발급 신청 서류를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음.

4.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4.1. 개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와 관련된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심사 제도의 효율성 증대, 양성기관의 운영 내실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이후의 품질 관리 등을 포

6)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넓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도 수정 없이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함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4.2. 필요성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학부/대학원/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이 급증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화 증대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받은 강의계획서와 실제 운영하는 강의 내용 간의 일치도 확인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활용하거나 적용 가능한 세부 지표 마련,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세부 지표의 기준, 하위 요소 등의 도출 필요
 - 서면 평가, 현장 방문 평가, 이의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학점은행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학점은행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양식 마련 필요

4.3. 조사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세부 지표를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학점은행제 대상 단체 심사 신청 절차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4.4. 유사 사례 요약

- 제도별 특징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도	내용	비고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1. 심사 주기 설정 • 1주기(1998년~2002년) 5년 • 2주기(2003년~2009년) 7년 • 3주기(2010년~2014년) 5년 • 4주기(2014년~2017년) 3년 • 5주기(2018년~2021년) 4년 2.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 마련 3. 진단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환류 시스템	심사 주기 등급 설정 및 후속조치 피드백 제공
	1. 심사 절차의 시스템화 •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단위원회 구	심사 절차

제도	내용	비고
	<p>성·연수, 서면 진단, 집체·현장방문 진단, 결과 산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내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절차 및 방법> 참조 	
간호교육 인증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 체제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 구성 체계는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개의 평가 영역과 1개 평가 부문, 28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 세부 내용 <평가영역 및 부문별 평가 항목> 참조 2. 판정 유형(판정 기준)에 따른 인증 기간의 차등화 3. 인증 결과 공개 및 활용 허용: 학과 홍보 등을 위한 자료 	세부 심사 기준 인증 결과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
한국공학 교육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인증 심사 기준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 <각 영역별 판정지침> 참조 - 프로그램 교육 목표 영역, 학습 성과 영역, 교과 과정 영역, 학생 영역, 교수진 영역, 교육 환경 영역, 프로그램 개선 영역,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영역 	세부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평가 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 	심사 절차

제도	내용	비고
	방문평가 → 인증평의회 → 종합판정 및 재심 • 인증 기준별 판정 종류: 만족, 보완, 미흡 • 공학인증 국내 혜택 및 국제혜택: 서류 전형 우대 등	인증 기준 유형
공인 노무사 보수교육 기관	• 개업노무사(등록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교육)과 윤리에 관한 교육(윤리교육)을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교사 재교육 (보수교육)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기관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기간 설정: 2년 2. 심사 절차: 서류 심사 - 관계자 인터뷰 심사 - 현장 심사 등 3. 기존 교육원과 신규 기관 선정 방법이 상이함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보건 교육사 양성기관	1. 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 과목 심사 2.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대학 기관 유사 과목 심사) :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심사요청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해당 학과 교육과	양성기관 심사

제도	내용	비고
	정 편성표(커리큘럼), 기타 동일 교과목 입증 자료(선택사항)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1. 양성기관의 분류: 대학교 및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임	양성기관 분류

4.5. 유사 자격 비교

○ 한국어교원 자격과 유사한 자격 제도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現)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한국공학 교육인증
목적	한국어교원 양성, 한국어교육 정상화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 화	중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국가 수준 점검 및 관리, 교육양성기관 능동적 개 선 노력 유도	공학교육 발전 촉진, 실 력 갖춘 공학기술 인력 배출하는데 기여
세부 심사 기준	①교육과정확인신청서 ②교육과목확인신청서 ③개별 교과목 강의계획 서 및 교수요목 교과목 일치, 운영여부	①교육과정·교육내용 체 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②교육 관련 인력 전문성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조성 현황	①교육여건 영역 (발전계획, 교원, 행·재 정, 수업환경) ②교육과정영역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③ 성과 영역 (운영, 교육, 환류)	①프로그램 교육 목표 ②프로그램 학습 성과 ③교과 과정 ④학생 ⑤교수진 ⑥교육 환경 ⑦프로그램 개선 ⑧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심사 시기	연2회(12~2월, 6~8월)	-	-	매년 1월~10월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現)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한국공학 교육인증
심사 주기	-	지정기간 2년	1주기(1998~2002) 5년 2주기(2003~2009) 7년 3주기(2010~2014) 5년 4주기(2014~2017) 3년 5주기(2018~2021) 4년	인증 등급별료 상이
심사 절차	①기관회원가입 ②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신청 ③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④결과발표 ⑤재심사신청 ⑥재심사 결과 발표	①접수 ②지정 심사 ③최종선정, 결과발표 ④지정	①기획 단계 ②자체역량진단 ③정량지표역량진단 ④정성지표역량진단 ⑤결과확정,발표 단계 ⑥결과 활용 단계 ⑦행·재정 조치 단계	①인증 평가 신청 및 선정 ②평가단 구성 ③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④서면 평가 ⑤방문 평가 ⑥예비 논평서의 완성 및 발송 ⑦논평 대응서의 제출 ⑧인증 평가(전공 분야 별, 대학별, 연도별) 조율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現)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한국공학 교육인증
				위원회 개최 ⑨인증 판정의 확정 및 결과 통보
심사 방법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육원 ① 서면심사 ② 인터뷰 • 신규기관 ① 서면심사 ② 현장심사 (프레젠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집체 진단 • 현장 방문 • 비대면 관계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 방문 평가 • 집체 평가
심사 등급	-	-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이전 평가 종합 판정과 현재 인증 기준별 인증 판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8단계로 구분 1단계: 차기정기평가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現)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한국공학 교육인증
				2단계: 중간보고 3단계: 중간방문 4단계: 조건부인증 5단계: 중간보고필 6단계: 중간방문필 7단계: 조건부인증해소 8단계 :인증불가
심사 인센 티브	-	-	A등급과 B등급은 현행 정원 유지 A등급 교원양성 정원 조 정에서 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차기정기평가는 6년, 중 간보고/중간방문은 3년 인증유효기간을 받음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5.1. 한국어교원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 설문조사 이전 기초 조사로서 현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는 학위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문항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하였음.
- 설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 기간: 2021.6.30.~2021.7.1.
 - 설문 방법: 온라인(google)
 - 설문 응답: 총 53명

1) 개인정보

성별

구분	N(%)
남자	18(34)
여자	35(66)
합계	53(100)

소속 및 직위

구분	N(%)
대학 학부과정 전임교원	23(43)
대학원 전임교원	4(7)
대학교 비전임교원	9(18)
대학원 비전임교원	2(4)
기타(시간강사 등)	15(28)
합계	53(100)

최종학위

구분	N(%)
박사	39(74)
박사 수료	7(13)
석사	5(9)
석사 수료	2(4)
기타	0(0)
합계	53(100)

전공

구분	N(%)
한국어교육	45(85)
국어국문학(국어학)	2(4)
국어국문학(문학)	2(4)
국어교육학	3(5)
기타	1(2)
합계	0(100)

전공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구분	N(%)
없음	4(8)
1급	23(43)
2급	20(38)
3급	6(12)
합계	53(100)

한국어교육 학부/대학원 강의 경력

구분	N(%)
1년 미만	0(0)
1년 이상 ~ 3년 미만	5(9)
3년 이상 ~ 5년 미만	7(13)
5년 이상 ~ 10년 미만	7(1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7(32)
15년 이상	9(18)
합계	53(100)

한국어교육 현장 강의 경력

구분	N(%)
1년 미만	0(0)
1년 이상 ~ 3년 미만	2(4)
3년 이상 ~ 5년 미만	1(2)
5년 이상 ~ 10년 미만	17(3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28)
15년 이상	17(32)
합계	53(100)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

구분	N(%)
초·중등교원	34(64)
심리상담사	1(2)
평생교육사	3(5)
공인중개사	0(0)
사회복지사	0(0)
다문화사회전문가	8(15)
보육교사	1(2)
기타	6(12)
합계	53(100)

□ 한국어교원 배출 규모의 적절성

구분	N(%)
적절하다	6(8)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다	43(43)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적다	0(0)
잘 모르겠다	4(12)
합계	53(100)

□ 매년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

구분	N(%)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조건이 지나치게 평이하다	13(30)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6(1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22(52)
기타	2(4)
합계	53(100)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복수 응답)

구분	N(%)
자격증 발급 요건에 학점 평점 도입	19(18)
졸업 시점으로 자격증 발급 시기 조정	21(19)
최소 이수 학점 조정	5(5)
자격증 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질 관리	32(30)
부전공 이수 과정 폐지	7(7)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 개선	21(19)
기타	2(2)
합계	53(100)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최소 이수 학점 조정에 대한 의견

구분	N(%)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	21(39)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	2(4)
이수 학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30(57)
합계	53(100)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최소 이수 학점 조정에 대한 의견

구분	N(%)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	21(39)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	2(4)
이수 학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30(57)
합계	53(100)

이수 학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구분	N(%)
1영역	11(22)
2영역	7(14)
3영역	17(35)
4영역	1(2)
5영역	13(27)
합계	53(100)

이수 학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구분	N(%)
1영역	1(25)
2영역	1(25)
3영역	0(0)
4영역	2(50)
5영역	0(0)
합계	53(100)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 개선의 방향

구분	N(%)
교원 자격 등급 축소	12(22)
교원 자격 등급 확대	3(5)
등급 취득 시 보수교육 제도 도입	27(51)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10(20)
기타	1(2)
합계	53(100)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의 개선 필요 여부

구분	N(%)
필요하다	33(62)
필요하지 않다	14(26)
잘 모르겠다	6(12)
합계	53(100)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구분	N(%)
심사 횟수(연 2회)	1(3)
심사 시기(12~2월, 6~8월)	1(3)
심사 절차	5(15)
심사 내용 및 기준	24(73)
기타	2(6)
합계	53(100)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최초 심사의 수준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로서의 적절성 여부

구분	N(%)
현행 최초 심사 수준이 적절하다	12(22)
현행보다 최초 심사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30(57)
현행보다 최초 심사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0(0)
잘 모르겠다	11(21)
합계	53(100)

- 최초 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심사 항목

구분	N(%)
교강사진의 전문성	22(74)
강의계획서 외의 교과목 운영 증빙 자료	4(13)
시설 및 재정 여건	0(0)
문서 외 방문 대면 평가	4(13)
기타	0(0)
합계	53(100)

- 자격증 발급 시점을 졸업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교원자격심사를 학위과정(대학·대학원) 운영 대학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교육부의 정교사 자격증 발급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에서는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 확인(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등), 학위 취득 여부 확인 등 자격증 발급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교원자격증 발급 권한을 기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N(%)
찬성한다	35(66)
반대한다	12(23)
잘 모르겠다	6(11)
합계	53(100)

-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자격증 취득 절차의 간소화(용이함), 학생 편의, 위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 취업의 용이함,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 최소화, 학생 집중 관리의 용이, 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했다면

- 다시 심사 할 이유가 없음, 발급시기의 적절성과 발급의 편의성, 교육부 기준과 통일성 고려해야 함’ 등이 있었음.
- 반대하는 이유로는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경영을 이유로 간단하고 평이하게 행정 처리를 할 위험이 있음, 전문성 결여,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현재 문제의식을 느낀 적이 없음, 자격 미달자에게 자격증이 남발될 우려가 있음, 기관별 절차와 기준의 부적합/부적절할 수 있음, 신뢰도 문제, 잡음 발생’ 등이 있었음.

□ 교원자격심사 권한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구분	N(%)
관련 업무 지정 담당자	5(9)
관련 업무 내용 이해도	32(61)
신청 서류 접수 확인 및 서류 수합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 안내	16(30)
기타	0(0)
합계	53(100)

(3) 재심사 제도 관련

□ 재심사 제도의 수준 정도

구분	N(%)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와 동일한 수준	18(34)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보다 간소화된 수준	11(21)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보다 전문화된 수준	23(43)
기타	1(2)
합계	53(100)

□ 재심사 제도의 시행 시기 및 횟수

구분	N(%)
최초 심사 이후 매년 재심사를 시행한다	1(2)
최초 심사 이후 일정 주기로 재심사를 시행한다	24(45)
최초 심사(또는 재심사)의 판정 등급에 따라 주기를 달리하여 시행한다	27(51)
기타	1(2)
합계	53(100)

□ 재심사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

구분	N(%)
2년 이하	10(20)
3년~4년	28(53)
5년~6년	15(27)
7년 이상	0(0)
합계	53(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재심사) 평가 방법

구분	N(%)
평가 결과에 따라 당락 여부 방식	16(30)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방식	37(70)
잘 모르겠다	0(0)
합계	53(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재심사) 평가 등급에 따른 주기

구분	N(%)
적절하다	37(70)
적절하지 않다	14(27)
잘 모르겠다	2(3)
합계	53(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중요 순위

- 1위: 교강사진의 전문성
- 2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 3위: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 4위: 수업 환경 및 여건
- 5위: 행·재정 운영 상황

□ 교강사진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N(%)
교강사진의 학위 여부	27(24)
교강사진의 연구 실적	21(19)
교강사진의 확보율	19(17)
교강사진의 영역별 전공 일치도	43(4)
기타	0(0)
합계	53(100)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N(%)
교육과정 체계 및 편성 방침 여부	36(44)
교육과정 편성 대비 교과목 개설 비율	25(31)
교육과정 및 영역별 강의에 대한 개선 계획	18(22)
기타	2(3)
합계	53(100)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N(%)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 여부	48(58)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수)	19(23)
수업 평가 결과(강의 만족도 점수)	14(17)
기타	1(2)
합계	53(100)

행·재정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N(%)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	45(62)
학생 1인 당 지원비	16(22)
학과 소개 및 교과목 편성표 자료 비치 여부	11(16)
기타	0(0)
합계	53(100)

□ 수업 환경 및 여건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N(%)
영역별 교과목 개설 수	42(51)
전공 강의실 수	8(10)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29(34)
기타	4(5)
합계	53(100)

□ 교강사진의 전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행재정 운영 상황, 수업 환경 및 여건 외에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응답 의견으로 ‘교강사진의 전문성, 수강생의 정보 반영, 세종학당과의 연계, 참여 학생,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수강생), 학생 관리, 수업실습 및 참관 등 교원 양성과 관련된 부분, 전문성, 전공 교수진 확보율,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재심사 제도 도입 시 적절한 평가 방식

구분	N(%)
서면 평가	11(21)
현장 방문 평가	1(2)
서면 평가 + 현장 방문 평가	41(77)
기타	0(0)
합계	53(100)

□ 자유 의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 및 재심사 제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응답한 의견으로는 ‘교원의 처우 개선, 심사의 디지털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의 질 관리가 필요, 한국어 교원의 정체성 확보, 실질적 평가 필요, 학점은행제가 취득자를 양산하고 있음 대책 마련 시급, 우수한 교원 양성이 최우선, 기관평가에 정원조정 권한을 가지고, 기관 권도 정도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 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 필요, 재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음’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5.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제도의 수정 및 재심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 유형별(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배포하였음.
- 설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 기간: 2021.7.26.~2021.9.10.
 - 설문 방법: 온라인(google)
 - 설문 응답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설문 요청 기관 수(개)	179	30	39	248
설문 응답 기관 수(개)	63	16	19	98
응답률(%)	35.2	53.3	48.7	39.52

※ 불성실 응답자 제외

○ 설문 분석 결과는 [별책2]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설문 결과 중 주요 내용만 기술하고자 함.

1) 현행 심사 제도 관련 결과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

- 질문: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초중등교원	38(60.32)	4(25.00)	4(21.05)
② 심리상담사	3(4.76)	0(0)	1(5.26)
③ 평생교육사	3(4.76)	2(12.50)	6(31.58)
④ 공인중개사	0(0)	0(0)	0(0)
⑤ 사회복지사	1(1.59)	2(12.50)	0(0)
⑥ 다문화사회전문가	12(19.05)	8(50.00)	7(36.84)
⑦ 보육교사	1(1.59)	0(0)	0(0)
⑧ 기타	5(7.94)	0(0)	1(5.26)
합계	63(100)	16(100)	19(100)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에 대한 응답으로 학위과정(대학, 대학원)은 ‘초중등교원’을 꼽았고, 학위과정(학점은행제)과 비학위과정의 운영기관은 ‘다문화사회전문가’라고 응답하였음.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의 적절성

- 질문: 현재의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적절하다	13(20.63)	10(62.50)	4(21.05)
② 너무 많다	42(66.67)	5(31.25)	8(42.11)
③ 너무 적다	1(1.59)	1(6.25)	2(10.53)
④ 잘 모르겠다	7(11.11)	0(0)	5(26.32)
합계	63(100)	16(100)	19(100)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너무 많다’고 응답한 반면,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적절하다’고 하였음.

○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

- 질문: 매년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자격 취득의 조건이 지나치게 평이하다	2(4.76)	1(20.0)	1(12.50)
②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8(19.05)	0(0)	3(37.50)
③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28(66.67)	4(80.0)	4(50.0)
④ 기타	4(9.52)	0(0)	0(0.0)
합계	63(100)	5(100)	8(100)

⇒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세 기관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고 응답하였음.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운영 기관 응답자 중 ‘기타’ 의견으로는 ‘위 1-3번 모두에 해당됨’, ‘자격자 수가 국내 취업 기회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지만, 해외에서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만 할 수도 없음’ 등이 있었음.

-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의 적절성
- 질문: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적절하다	31(49.21)	11(68.75)	12(63.16)
② 적절하지 않다	26(41.27)	3(18.75)	5(26.32)
③ 잘 모르겠다	6(9.25)	2(12.50)	2(10.53)
합계	63(100)	16(100)	19(100)

⇒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에 대하여 세 기관 모두 ‘적절하다’ 고 응답하였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성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필요하다	33(52.38)	4(25.00)	10(52.63)
② 필요하지 않다	24(38.10)	9(56.25)	3(15.79)
③ 잘 모르겠다	6(9.52)	3(18.75)	6(31.58)
합계	63(100)	16(100)	19(100)

⇒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사항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심사 횟수(연 2회)	1(3.03)	0(0)	0(0)
② 심사 시기(12~2월, 6~8월)	3(9.0)	2(50.0)	0(0)
③ 심사 절차	1(3.03)	0(0)	0(0)
④ 심사 내용 및 기준	24(72.73)	1(25.0)	10(100)
⑤ 기타	4(12.12)	1(25.0)	0(0)
합계	29(100)	3(100)	10(100)

⇒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심사 내용 및 기준’ 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심사 시기’ 라고 응답하였음.

⇒ 그 이유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필요, 과목 개설 및 담당 교원의 전문성,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유연성 필요, 교과목 개설에 대한 철저한 내용 검증 및 확인의 필요, 실질적 운영 내용 확인 필요’ 등이 있었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중요도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N(%)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①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48 (76.19)	9 (14.29)	6 (9.52)	0 (0)
②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9 (14.29)	36 (57.14)	18 (28.57)	0 (0)
③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14 (22.22)	24 (38.10)	23 (36.51)	2 (3.17)
④ 행·재정 운영 상황	1 (1.59)	8 (12.70)	8 (12.70)	46 (73.02)

학위과정(학점은행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①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9 (56.25)	3 (25.53)	4 (25.0)	1 (6.25)
②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3 (18.75)	6 (35.29)	5 (31.25)	2 (12.5)
③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3 (18.75)	5 (29.41)	6 (37.5)	2 (12.5)
④ 행·재정 운영 상황	1 (6.25)	2 (11.76)	1 (6.25)	11 (68.75)

비학위과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①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4 (73.68)	2 (10.53)	2 (10.53)	1 (5.26)
②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5 (26.32)	9 (47.37)	3 (15.79)	2 (10.53)
③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3 (15.79)	6 (31.58)	9 (47.37)	1 (5.26)
④ 행·재정 운영 상황	0 (0)	2 (10.53)	4 (21.05)	13 (68.42)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중요도에 대하여 세 기관 모두 1순위는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순위는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3순위는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4순위는 ‘행·재정 운영 상황’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46(40.71)	12(50.0)	15(53.57)
②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36(31.86)	5(20.83)	5(17.86)
③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성	23(20.35)	4(16.67)	3(10.71)
④ 수업 평가 결과 (강의 만족도 점수)	7(6.19)	2(8.33)	4(14.29)
⑤ 기타	1(0.88)	1(4.17)	1(3.57)
합계	105(100)	21(100)	23(100)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으로 세 기관 모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이라 응답하였음.

○ 실습교과목의 충실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실습교과목의 충실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42(33.33)	11(36.67)	7(25.0)
②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41(32.54)	11(36.67)	11(39.29)
③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성	35(27.78)	8(26.67)	9(32.14)
④ 수업 평가 결과 (강의 만족도 점수)	5(3.97)	0(0)	1(3.57)
⑤ 기타	3(2.38)	0(0)	0(0)
합계	123(100%)	30(100%)	28(100%)

⇒ 실습교과목의 충실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으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운영기관은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이라 응답하였고,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과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을 선택하였고, 비학위과정 학습자들은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이라 응답하였음.

-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교강사진의 확보율	32(27.83)	6(24.0)	5(21.74)
② 교강사진의 학위 여부	24(20.87)	4(17.39)	2(8.70)
③ 교강사진의 담당 교과목과 전공 적합성	48(41.74)	13(56.52)	16(65.57)
④ 교강사진의 연구 실적	9(7.83)	2(8.70)	0(0)
⑤ 기타	2(1.74)	0(0)	0(0)
합계	104(100)	23(100)	23(100)

⇒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세 기관 모두 ‘교강사진의 담당 교과목과 전공 적합성’ 이라 응답하였음.

- 행·재정 운영 상황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행·재정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학과 운영 지원 인력 (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	46(45.1)	11(50.0)	11(37.93)
② 전공 강의실 수	7(6.86)	1(4.55)	2(6.90)
③ 수업 규모의 적절성 (수강 인원 수)	31(30.39)	7(31.82)	12(41.38)
④ 학과 소개 및 교과목 편성표 자료 비치 여부	15(14.71)	1(4.55)	2(6.90)
⑤ 기타	3(2.94)	2(9.09)	2(6.90)
합계	84(100)	19(100)	25(100)

⇒ 행·재정 운영 상황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 이라 응답하였고, 비학위과정은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수)’ 이라 응답하였음.

2) 재심사 제도 도입 관련 결과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수준

- 질문: 재심사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최초 심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	14(22.22)	4(25.0)	3(15.79)
② 최초 심사 제도보다 간소화된 수준	41(65.08)	10(62.5)	14(73.68)
③ 최초 심사 제도보다 전문화된 수준	7(11.11)	1(6.25)	2(10.53)
④ 기타	1(1.59)	1(6.25)	0(0)
합계	63(100)	16(100)	19(100)

[기타 의견]

-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최초 심사와 심사 항목은 동일하게 하되, 최초 심사에서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문성이 필요함.
 -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최초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고 재심사는 최초 심사 이후 유지 보완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함.
- ⇒ 재심사 제도 수준에 대하여 학위과정(대학, 대학원),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비학위과정 세 곳 모두 ‘최초 심사 제도보다 간소화된 수준’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시행(시기 및 횟수)
- 질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시행(시기 및 횟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최초 심사 이후 매년 재심사를 시행한다	0(0)	1(6.25)	1(5.26)
② 최초 심사 이후 일정 주기로 재심사를 시행한다	36(57.14)	7(43.75)	8(42.11)
③ 판정 등급에 따라 주기를 달리하여 시행한다	27(42.86)	8(50.00)	10(52.63)
④ 기타	0(0)	0(0)	0(0)
합계	63(100)	16(100)	19(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시기 및 횟수와 관련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은 최초 심사 이후 일정 주기로 재심사를 시행하기를 원하였지만,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및 비학위과정은 최초 심사(또는 재심사)의 판정 등급에 따라 주기를 달리하여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주기

- 질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2년~3년	4(11.11)	2(28.57)	3(37.50)
② 4년~5년	26(72.22)	5(71.43)	5(62.50)
③ 6년~7년	3(8.33)	0(0)	0(0)
④ 8년 이상	3(8.33)	0(0)	0(0)
⑤ 기타	0(0)	0(0)	0(0)
합계	36(100)	7(100)	8(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주기는 세 기관 모두 ‘4년~5년’ 이라고 응답하였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의 평가 방식

- 질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평가 방식으로 무엇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평가 결과에 따라 당락 여부 방식	14(22.22)	5(31.25)	6(31.58)
②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방식	42(66.67)	10(62.50)	12(63.16)
③ 잘 모르겠다	7(11.11)	1(6.25)	1(5.26)
합계	63(100)	16(100)	19(100)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평가 방식에 관하여 세 기관 모두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 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음.

- 설문 분석 결과, 학위과정(대학, 대학원), 학위과정(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세 곳 모두 최초 심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재심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초 심사 제도보다 간소화된 수준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재심사 제도의 시행 시기 및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기관별 응답이 상이하였음.

5.3. 예비 한국어교원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비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설문 기간: 2021.11.1.~2021.11.7.
 - 설문 방법: 온라인(google)
 - 설문 응답: 총 120명

<현재 이수 중인 과정>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석/박)	학점은행제	
N(%)	56(46.7)	26(21.7)	28(23.3)	10(8.3)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N(%)	36(30.0%)	25(20.8%)	29(24.2%)	30(25.0%)

<국적>

구분	한국인	외국인
N(%)	107(89.2)	13(10.8) *네팔, 호주,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

- 질문: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N(%)
① 적절하다	19(15.8)
②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다	77(64.2)
③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적다	5(4.2)
④ 잘 모르겠다	19(15.8)
합계	120(100)

⇒ 매년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적절하다	16(28.6)	1(3.8)	0(0)	2(20)	19(15.8)
② 너무 많다	24(42.9)	23(88.5)	25(89.3)	5(50)	77(64.2)
③ 너무 적다	4(7.1)	0(0)	0(0)	1(10)	5(4.2)
④ 잘 모르겠다	12(21.4)	2(7.7)	3(10.7)	2(20)	19(15.8)
합계	56(100)	26(100)	28(100)	10(100)	120(100)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가 너무 많은 이유

- 질문: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N(%)
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조건이 지나치게 평이하다	10(13.0)
②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16(20.8)
③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29(37.7)
④ 기타(①②③번 모두 해당)	19(24.7)
⑤ 기타(일자리 부족, 무분별한 자격증발급제도, 직업으로서의 가치 하락 등)	3(3.8)
합계	77(100)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가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①~③ 모두 해당한다고 응답한 기타 의견이 뒤를 이었음. 3위로는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는 의견이 있었음.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학부 및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그 이유에 ①~③이 모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고,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고 하였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3(12.5)	5(21.7)	2(8)	0(0)	10(13.0)
②	5(20.8)	6(26.1)	3(12)	2(40)	16(20.8)
③	14(58.4)	7(30.5)	6(24)	2(40)	29(37.7)
④	0(0)	5(21.7)	14(56)	0(0)	19(24.7)
⑤	2(8.3)	0(0)	0(0)	1(20)	3(3.8)
합계	24(100)	23(100)	25(100)	5(100)	77(100)

○ 현재 이수 중인 기관 및 과정 선택 기준

- 질문: 현재 이수 중인 기관 및 과정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분	N(%)
① 접근의 용이성	25(20.8)
② 기관의 인지도	20(16.7)
③ 교육과정 및 교수진	55(45.8)
④ 등록금 또는 수강료	5(4.2)
⑤ 기타 (자격증 취득의 용이함, 지인 소개 등)	15(12.5)
합계	120(100)

⇒ 현재 이수 중인 기관 및 과정을 선택한 기준은 ‘교육과정 및 교수진’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N(%)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9(16.1)	5(19.2)	9(32.1)	2(20)	25(20.8)
②	10(17.9)	3(11.5)	6(21.4)	1(10)	20(16.7)
③	31(55.4)	17(65.5)	0(0)	7(70)	55(45.8)
④	3(5.3)	0(0)	2(7.1)	0(0)	5(4.2)
⑤	3(5.3)	1(3.8)	11(39.3)	0(0)	15(12.5)
합계	56(100)	26(100)	28(100)	10(100)	120(100)

⇒ 학부 및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과 비학위과정은 현재 이수 중인 기관 및 과정 선택의 기준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진’ 이라고 응답하였음.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자격증 취득의 용이함, 자격증 취득이 빠름’ 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접근의 용이성(온라인이라서 쉬움)’ 을 선택하였음.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만족도

- 질문: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N(%)
① 매우 만족한다	48(40)
② 대체로 만족한다	69(57.5)
③ 대체로 불만족한다	3(2.5)
합계	120(100)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체로 만족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25(44.6)	14(53.9)	5(17.9)	4(40)	48(40)
②	30(53.6)	11(42.3)	22(78.6)	6(60)	69(57.5)
③	1(1.8)	1(3.8)	1(3.5)	0(0)	3(2.5)
합계	56(100)	26(100)	28(100)	10(100)	120(100)

⇒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은 ‘매우 만족한다’ 는 응답이 많았으나 학부 과정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은 ‘대체로 만족한다’ 는 응답이 많았음.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는 이유
 - 질문: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구분	N(%)
① 교수자(교수, 강사)의 전문성	79(35.4)
②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충실함	72(32.3)
③ 교육환경 시설 및 시스템	39(17.5)
④ 과정 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우수함	32(14.4)
⑤ 학위 취득의 용이함	1(0.4)
합계	223(100)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는 이유는 ‘교수자(교수, 강사)의 전문성’ 이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충실함’ 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합계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42(41.2)	24(58.5)	5(7.8)	8(50.0)	79(35.4)
②	34(33.3)	13(31.7)	20(31.3)	5(31.3)	72(32.3)
③	19(18.6)	2(4.9)	16(25.0)	2(12.5)	39(17.5)
④	7(6.9)	2(4.9)	22(34.4)	1(6.2)	32(14.4)
⑤	0(0)	0(0)	1(1.6)	0(0)	1(0.4)
합계	102(100)	41(100)	64(100)	16(100)	223(100)

⇒ 학부 및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비학위과정에 만족하는 이유는 ‘교수자(교수, 강사)의 전문성’이었으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만족하는 이유는 ‘과정 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우수함’이었음.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질문: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구분	N(%)
①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부실함	2(33.3)
② 과정 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미비	2(33.3)
③ 교수자(교수, 강사)의 전문성 부족	1(16.7)
④ 교육환경 시설 및 시스템	1(16.7)
합계	6(100)

⇒ 현재 이수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학부 과정,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각 1명씩 3명임.

- 최초 심사 이후의 정기적 점검(제도화)의 필요성
- 질문: 양성기관에 대한 최초 심사 이후 정기적 점검의 제

도화가 필요한가?

구분	N(%)
① 필요하다	106(88.4)
② 불필요하다	4(3.3)
③ 잘 모르겠다	8(6.7)
④ 기타 (학교 이외의 기관 점검 필요, 현재 양산을 위해 불필요, 이후 안정화 시기에 100% 도입)	2(0.8)
합계	1(0.8)

⇒ 재심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

- 질문: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p>자격증 취득자 수의 양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늘리기로 인한 자격증 취득자 수의 양산 현상 우려 - 무분별한 학과 승인을 없애고,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기를 바람.
<p>자격증 취득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인정 자격증으로 바뀌면 좋겠음. - 지금보다 까다로운 운영 필요 - 자격 검증 강화 필요(다른 전공의 자격증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취득이 매우 쉬움) -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기준의 변화 필요 - 시험의 도입(시험을 통한 합격자에게만 자격증 부여) -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 상향 - 대학 위주의 자격증 취득 - 최소한의 성적 기준 도입(평균 전공 성적

	<p>B+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전공을 통한 자격증 취득 내용의 수정 필요 - 형식적인 자격증 취득의 지양
현장 적용 교과목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교수법 위주의 교과목 상향 - 현장 적용 필요 교과목 신설
실습 교육의 보충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교육의 시수 부족 - 현장실습 교과목의 추가
자격증 인정의 구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과정의 차이에 비해 등급 차이가 없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은 상이한데,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동일함 ⇒ 각 자격증의 위계화 필요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후의 취업 연계 방안 마련 - 자격증 취득 이후의 취업이 더 어려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해도 결국 석사과정에 입학해야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시간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제도 - 비학위과정의 불필요함 -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의 필요

6.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한국어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인터뷰 대상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한국어교육 경력	직위
전-1	15년	대학교 부교수
전-2	10년	대학교 부교수
전-3	15년	대학교 조교수
전-4	18년	대학교 조교수
전-5	9년	대학교 조교수
전-6	20년	대학교 부교수
전-7	7년	대학교 부교수
전-8	24년	대학교 교수

○ 인터뷰 질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복 응답의 경우, 한 번만 제시하였음.

1. 2020년 한 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8,479명이며, 2021년 6월 기준 누계 62,059명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의 양적 규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내 학습자 증가 추세 및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원 수가 많다고 생각함.
- ⇒ 국내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양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전 세계에서 수요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음.
- ⇒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 자격을 취득해도 실제 사용이 어려운 자격증이 되다 보니 한국어교원 자격 자체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봄.

2.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제도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한 번 통과하여 인증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이후로 양성기관의 전문성 유지나 효율성에 대한 재확인이나 점검의 절차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만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인증만 받으면 몇 십 년이 지나도 점검과 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방식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기적 재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원 자격의 질 보장이 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임. 특히, 양성기관의 전문성 유지나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적 처리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전문성 및 질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현행 심사제도에서 확인하는 교육과정과 교과목 두 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행 두 가지 요소 외에 더 필요하거나 심화되어야 하는 요소(또는 내용)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강사진의 전문성, 교강사진의 질적 평가, 실습 과목의 피드백 및 운영 과정 점검,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 참조

4. **현행 심사제도에 교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이 포함된다면 하위 심사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강사진의 확보율, 교강사진의 학위 여부, 교강사진의 연구 실적 등)**

⇒ 교강사진의 확보율, 한국어 현장 교육 경력, 전공 및 학위 여부, 연구 실적, 강의 경력, 5영역 강사 기준의 변경 필요, 3영역과 5영역 담당 교원은 한국어교육 경력 필수 소지

5. **만약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합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재심사 제도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년, 3년(2인), 4년, 3~5년, 5년, 8년, 10년

6.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장점: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예비 한국어교원의 역량 제고, 기관 자체 점검을 통한 질적 제고(교육과정 점검 및 개선훈 등의 지속적인 평가·환류 체계 구축 가능)

⇒ 단점: 행정 처리의 가중, 에너지 소모, 현장의 반대, 평가 후속 문제의 우려(부적합 받을 시 교원 자격 발급 여부, 전공 운영, 소속 교·강사진, 재학 중인 학생들이 겪게 될 고용, 졸업, 취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불공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등급별 평가 결과, 불필요한 행정처리 등), 재심사 제도의 부정적 결과에 따른 구체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7.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도입,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증 소지자 수 증가, 반면 한국어교육 역량 함양 부족
- ⇒ 한국어교육 학부 졸업생들의 진입 장벽이 높음(석사/박사과정 입학해야 함.)
- ⇒ 업계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가 안 좋음.
- ⇒ 심사 시 기준, 증빙 항목을 명확히 고지한 후 원활하게 재심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 재심사 제도 도입 시 증빙 서류 등의 간소화 작업 요청
- ⇒ 재심사 제도를 통한 ‘탈락’ 이 이루어지면 안 됨.

7.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및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적 제고 및 행·재정적 운영 추진을 위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위한 최초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심사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심사는 교원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임.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한국어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수준을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방안 마련을 위해 ‘국립국어원(2017), 2017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의 영역별 평가 지표와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을 검토하였음.

7.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고려사항

-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높이면서 자격증의 취득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인증 평가를 통한 기관 재심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위임받아 한국어교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그 이유를 강승혜(2017), 시애틀컨설팅(2019) 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 고려할 바를 중심으로 다음 5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음.
 -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의 다양성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률인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으로,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등이 이에 해당함.

- 학위과정은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과 함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은행제가 포함됨. 한편, 비학위과정은 과정을 이수하여도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을 말하며 대학교 부속(부설) 한국어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이에 속함.

2)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

- 오프라인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가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선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비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학점은행제의 오프라인 과정이 속함. 온라인 과정에는 교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거리 학습으로, 이에선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의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이 포함됨.
- 위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강승혜, 2017:15).

고등교육법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평생교육법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3) 자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여부
-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가 필수적임. 그러나 과목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되지 못하므로 자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강승혜, 2017:157). 따라서 학점은행제는 별도의 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점은행제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거나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국어원의 교과목 심사 및 개인 자격 심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강승혜, 2017)는 의견이 제시됨.
- 4)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교육여건, 교육시설 및 학생 지원의 차이

- 현재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학부와 대학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위과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요구되는 인력 및 시설, 평가 관리 체계 등이 다 다르나, 이들 교육기관에게 동일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증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움.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전임교원 확보율임. 현재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다름(강승혜, 2017:125). 학부 또는 대학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전임교원수가 다름. 따라서 학생 복지나 상담, 장학 및 취업 등에서도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서 이러한 고려 없이 인증평가를 시행한다면 평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교육기관만 더 경쟁력을 갖게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7.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방안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기준의 정비안은 재심사 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1안, 2안, 3안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 세 가지 안은 영역별 교과목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현행 제도보다 심사의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한 것임.
- 새로 제시하는 세 가지 안 중에서 1안과 2안은 3안에 비해 지표의 개수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내용도 축소하여 구성된 것이며 기관 유형에 따라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공통된 지표를 사용하되 진단 기준 및 척도는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영역	항목	지표	현행	1안	2안	3안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	●	●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	●	●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	●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	●
2. 교원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	●
		2.1.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	●
		2.2.2.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
3. 교육환경	3.1. 교육환경 및 시설	3.1.1.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 (온/오프라인)				●
		3.1.2. 수업 규모의 적절성				●
	3.2.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2.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	●
		3.2.2.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	●
		4.1.2.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
	4.2. 운영 성과*	4.2.1. 신입생 충원율				●
		4.2.2. 중도탈락 학생 비율				●

* 4.2. 항목은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는 대학교 학부 과정에만 적용
대학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 4.1.2. 항목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원화하여 적용함.

- 우선, 크게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습 교과목 운영’으로, 교원·강사는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 ‘전임교원 및 강사의 전문성’으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 및 시설’,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으로, 성과는 ‘교육 성과’와 ‘운영 성과’의 항목으로 구분함.
- 각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평가 대상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들이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군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는가를 의미함.
 - *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의 경우, 최초 심사에서 통과했을 시 재심사 시 면제, 일부 새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격이 해당 과목을 담당하기에 적합한가를 의미함.
 - **실습 기관의 적합성:**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구성 중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이 가능한 한국어교육 실습 현장 범위에 부합하는가를 의미함.
 - **실습 지도의 충실성:** 수강생의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과 현장경험보고서 작성률, 현장 경험 지도 및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실습 지도를 얼마

나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의미함.

-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비율과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함.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개설된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중 대학이나 기관 내 전공과목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시수 비율을 의미함.
-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전공이 일치하는 전임교원 및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
-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학과(전공) 및 기관의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연구실적 최소기준을 충족시킨 교원의 비율을 의미함.
-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온/오프라인):**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이 예비 한국어교원들의 수업 능력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수업 규모의 적절성:** 수강학생 수가 수업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로 운영되었는지를 의미함.
-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교원, 교육과정 운영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인력을 두었는지를 의미함.
-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성적 지원을 의미함.
- **강의 만족도:** 학과(전공) 및 기관에 개설된 전체 강좌 가운데 강의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0점 이상을 획

특한 강좌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강의 만족도 대신 ‘교육 만족도’로 수정된다면 자체 전공 교육(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여, 각 항목별 만족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학과(전공) 및 기관의 재학생 (또는 등록생) 수 대비 영역별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충족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비율을 의미함.
- **신입생 충원율:** 학과(전공) 및 기관의 정원 내 모집인원 대비 입학생 비율을 의미함. 단, 학점은행제 및 비학위과정의 경우, 정해진 정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생의 증감 추이(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통한 판단으로 대체 가능함.
- **중도탈락 학생 비율:** 학과(전공) 및 기관의 재적 학생 중 제적 또는 자퇴 등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 각 지표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진단척도는 A-F, 또는 P/F로 나뉘며 A~C는 P로서 우수 인증기관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임. D의 경우 보완 후 재심사를 의미함.

-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구분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정량		정성
기준	학 위 과 정	학부, 대학원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 수: A 적합 교과목 수: B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C=(B/A) \times 100$ 적합 비율(전체): C/5
		학점 은행제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 수: A 적합 교과목 수: B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C=(B/A) \times 100$ 적합 비율(전체): C/5			
	비학위과정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수: A 적합 교과목 수: B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C=(B/A) \times 100$ 적합 비율(전체): C/5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학 위 과 정	학부, 대학원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 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 빙 자료			
		학점은 행제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 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 빙 자료			
	비학위과정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 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 빙 자료			

-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구분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정량	정성
기준	<p>전공 일치 과목 수(3년간 합산): A 개설과목 수(3년간 합산): B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C=(A/B) \times 100$</p> <p>교수자의 전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 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p> <p>①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경우</p> <p>② 교과목 교수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판단은 교육 내용을 전 공하였더라도 박사학위논문을 해당 전공 주제로 작성하였</p>	

	<p>다면 해당 전공으로 판단함.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경우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판단함.</p> <p>③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연구실적 200%에는 연구논문(100%), 전문서적(100%), 교과서(50%), 번역서(30%), 연구보고서(50%) 등이 포함됨. ‘전문서적’은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출판된 강의용 교재나 한국어 교재 등을 포함함.</p> <p>④ 3영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 위 ①, ②, ③ 기준 외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도 포함함.</p> <p>⑤ 5영역 담당 교수자는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이거나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를 전공 일치로 판단함.</p>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학점은행계 1년간, 비학위과정 2년간) 과목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설 교과목 목록 및 시간표 등 - 개설과목별 교수자 전공 일치 여부 목록 자료 - 교수자의 세부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학위증명서, 학위기, 논문 별쇄본 등) 				

- 실습 기관의 적합성

구분	실습 기관의 적합성	
	정량	정성
기준	실습 협력 체결기관 정보 -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체 학급 수, 협력 체결 일자, 강의 실습 일자, 강의 참관 일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여부 작성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타 기관과 협력 시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혹은 협조 공문(단, 양쪽기관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습’과 관련한 협약 내용이 반드시 기술되어 있는 양해 각서여야 함) - 부속 기관과 협력 시 강의실습 또는 현장 강의참관 협조 공문 - 공문협력 체결 기관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국어교육경력 인정되는 실습 현장 범위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협력 체결 기관장의 강의실습 또는 현장 강의참관 확인서 등	

- 실습 지도의 충실성

구분	실습 지도의 충실성	
	정량	정성
기준	실습 전, 중, 후의 다양한 지도(실습 오리엔테이션, 강의 참관, 교안 작성, 모의 수업, 시범 강의, 실습 평가, 수강생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실습 지도교수 명단 - 학기별(기수별)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참여자 명단 - 학기별(기수별) 강의실습 계획서 및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참관 및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국립국어원 양식)’ (단, 현장 경험 시수가 명기된 자료) - 현장실습 지도 관리부 - 실습 전/중/후 지도와 관련된 실제 자료
--	---

-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구분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정량		정성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수: A 전임교원 확보 기준: $B(B=A/30)$ 전임교원 수: C 전임교원 확보율: $(C/B) \times 100$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 A 전공과목 강사 수: B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B/A) \times 100$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명부 - 재직증명서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학위과정에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계획서 및 출석부) - 재학생 명부 등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 전공과목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전공과목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구분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정량			정성	
기준	총 전공 과목 강의 시수: A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 시수: B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B/A) \times 100$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 교원별 전공과목 수 및 강의시수 - 평가 시점 직전 2학기(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				

-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구분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정량			정성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 A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A \times 100$			
	강사 확보율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 A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 B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B/A \times 100$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부 - 재직증명서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				

	<p>는 공식적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연구실적 200%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관련 서류 -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경력 증명서 -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영역별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

-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구분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정량		정성		
기준	전임교원 수: A 연구실적 최소기준 (3년에 200%) 충족 교원 수: B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B/A)X100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의 연구업적 일람표 - 전임교원의 3년간 연구 실적 합계 				

-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은/오프라인)

구분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	
	정량	정성
기준	전용 강의실 확보 여부(시설 활용 목적 기술)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시설 확보 현황(전용 강의실, 행정 지원실 배정 현황)	

- 수업 규모의 적절성

구분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정성
기준	총 개설 강좌 수: A 25명 이하: B, 26~30명: C, 31~35명: D, 36~40명: E 적정 규모 강좌 수: $[F=\{B+(C \times 0.7)+(D \times 0.5)+(E \times 0.3)\}/A \times 100]$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전공과목 강좌별 수강 학생 수 - 강좌별 수강자(성적처리 학생) 명단	

-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구분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정량	정성
기준	행정 전담 인력 인원 및 담당 업무 기술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행정 전담 인력 관련 규정 - 행정 전담 인력 업무 분장 표	

-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정량	정성
기준	홈페이지 구축 여부 행정 서비스 정성적 기술	
진단 척도	P: 적합	F: 부적합
첨부 자료	- 홈페이지 관련 서류(첫 화면 사진 - 주요 콘텐츠, 주소 포함) - 학생 편의 지원 목록 서류	

- 강의 만족도

구분	강의 만족도				
	정량			정성	
기준	강의평가 총 강좌 수: A 강의평가 3.0 이상 강좌 수: B 강의 만족도: $C = (B/A) \times 100$				
진단 척도	A: 95% 이상 ~ 100%	B: 90% 이상 ~ 95% 미만	C: 85% 이상 ~ 90% 미만	D: 80% 이상 ~ 85% 미만	F: 80% 미만
	P: 85%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0% 미만
첨부 자료	- 전공별 과목 개설현황을 알 수 있는 수강편람(강의자, 강의 시간, 강의 장소 등을 포함) - 강의평가 결과				

-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구분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정량		정성		
기준	학위과정	전체 재학생 수 : A 자격증 취득 학생 수 : B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 $C = (B/A) \times 100$			
	비학위과정	수료생 수 : A 80% 이상 출석한 학생 수 : B 연수생 이수율 : $C = (B/A) \times 100$			
	※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은 시험 없이 졸업을 기준으로 필요 이수학점 취득 시 자격증이 부여되는 반면, 비학위과정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질적 자격증 취득률이 매우 낮을 수 있으며, 과정 수강 목적이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이 있으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함.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 재학생 목록 - 자격증 취득자 목록 및 관련 서류				

- 신입생 충원율

구분	신입생 충원율				
	정량			정성	
기준	※ 대학교 학부 과정만 적용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진단 척도	A: 100%	B: 95% 이상 ~ 100% 미만	C: 90% 이상 ~ 95% 미만	D: 85% 이상 ~ 90% 미만	F: 85% 미만
	P: 90% 이상 ~ 100%			보완 후 재심사	F: 85% 미만
첨부 자료	-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 활용				

- 중도탈락 학생 비율

구분	중도탈락 학생 비율				
	정량			정성	
기준	※ 대학교 학부 과정만 적용 중도탈락 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 중도탈락 학생 유형 - 미등록: 등록하지 않아서 제적된 학생 - 미복학: 휴학 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자퇴: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자 - 학생활동: 학생활동으로 인해 징계 제적된 자 - 유급제적: 동일학년 유급회수 누적으로 제적된 자 - 수업연한 초과: 수업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 기타: 위에 열거한 사유 외의 내용으로 제적된 자				
진단 척도	A: 100% 이상	B: 95% 이 상 ~ 100% 미만	C: 90% 이 상 ~ 95% 미만	D: 85% 이 상 ~ 90% 미만	F: 85% 미 만

첨부 자료	-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 활용
----------	---------------------------------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개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안

- 1안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의 기준을 정비하면서 최소화의 내용만 추가된 것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 운영, 실습 교과목 운영, 교원 확보율을 확인하고자 함.
- 여기에서 최소한의 내용이란, 기존 제도에 가장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의미함.
- 기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심사는 교육과정과 교과목 확인만으로 진행되었으나,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기관 모두 ‘1순위-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순위-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3순위-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4순위-행·재정 운영 상황’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 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음.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은 기존 제도와 같은 맥락이며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하여 교수의 자격 요건 등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은 이미 5영역의 실습 교과목은 <실습과

목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표에는 추가되었다고 해도 새롭게 도입된 내용은 아님.

-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과 연결되는 지표임.

영역	항목	지표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2. 교원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2안

- 2안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의 기준을 정비하면서 1안과 3안의 중간 단계로서 교육과정과 교과목 운영, 실습 교과목 운영, 교원 확보 및 전문성,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교육 등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함.
- 2안은 1안의 네 개 지표(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는 기본으로 두면서 네 개의 지표를 추가하였음.
- 먼저, 1.2. 실습 교과목 운영 항목에서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이 포함되었음. 이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실습교과목의 충실성과 관련해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도출된 내용임.

- ‘2.2.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과 연결되는 지표임.
- ‘3.1.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는 행·재정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으로 도출된 내용이며 중간보고회 자문 의견에서도 언급되었음. 따라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필수 요소인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는 2안에 포함하였음.
- 실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수업 평가 결과, 즉 강의 만족도 점수임. 따라서 강의 만족도를 교육 성과 항목에서 다름으로써 수업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를 2안에 포함하였음.

영역	항목	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2. 교원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3. 교육환경	3.1.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1.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 3안

- 3안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의 기준을 정비하면서 가장 강화된 안으로 교육과정, 교원 및 강사, 교육환경, 교육 성과까지 전반적으로 두루 확인할 예정이다.
- 다만, 4. 성과 지표 중 4.2. 지표는 학위과정 중 대학교 학부 과정에만 적용됨.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따르면, 성과 영역의 평가 기준을 교육과정 영역의 운영 성과, 교육 성과, 환류 성과 등의 진단항목으로 나누어 진단함. 그 중 운영성과, 즉 학생유지 성과(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는 우수한 예비교사 지원을 확보하고 유지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성과 지표 설정 시 이를 참조하여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 유지 성과로 측정하고자 하였음.
 - 학위과정의 학부 과정을 제외한 대학원 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은 기관의 특성상 이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히, 학점은행제의 경우 한 기관에서만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학점 취득을 할 수 있으므로 한 기관에서의 학생유지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를 부여하는 기관이 아니며 운영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학생 유지 성과를 살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영역	항목	지표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2. 교원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1.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2.2.2.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3. 교육 환경	3.1. 교육환경 및 시설	3.1.1.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온/오프라인)
		3.1.2. 수업 규모의 적절성
	3.2.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2.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3.2.2.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4.1.2.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4.2. 운영 성과	4.2.1. 신입생 충원율
		4.2.2. 중도탈락 학생 비율

○ 각 안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음.

	1안	2안	3안
A형	P/F(75%) + 척도(25%) = 100%	P/F(50%) + 척도(50%) = 100%	P/F(50%) + 척도(50%) = 100%
B형	P/F(100%) + 확인 = 100%	P/F(50%) + 척도(50%) + 확인 = 100%	P/F(60%)+ 척도(40%) + 확인 = 100%

* ‘확인’ 은 점수에 포함하지 않고, 확인용으로만 활용함.

- 1안

영역	항목	지표	A형	B형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P/F	P/F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P/F	P/F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P/F	P/F
2. 교원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척도	확인

- 2안

영역	항목	지표	A형	B형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P/F	P/F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P/F	P/F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P/F	P/F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P/F	P/F
2. 교원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척도	척도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척도	척도
3. 교육 환경	3.1.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1.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P/F	확인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척도	확인

- 3안

영역	항목	지표	A형	B형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P/F	P/F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P/F	P/F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P/F	P/F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P/F	P/F
2. 교원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척도	척도
		2.1.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척도	척도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척도	척도
		2.2.2.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척도	척도
3. 교육환경	3.1. 교육환경 및 시설	3.1.1. 전용 강의실 및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온/오프라인)	P/F	P/F
		3.1.2. 수업 규모의 적절성	P/F	P/F
	3.2.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2.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P/F	P/F
		3.2.2.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	P/F	P/F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척도	척도
		4.1.2.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	척도	확인
	4.2. 운영 성과	4.2.1. 신입생 충원율	척도	확인
		4.2.2. 중도탈락 학생 비율	척도	확인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충족, 미충족-보완요청) 중 1개 부여

- A: (우수)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게시
- B: (충족) 통과
- C: (미충족) ‘컨설팅’ 의무화 및 1년 뒤 재평가 실시

※ [부록] 어린이집 등급 평정 방식 참고

○ 본 연구진은 1안~3안 중 ‘2안 → 1안 → 3안’ 순으로 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증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인증 수여

- 모든 인증기관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여 유효기간 5년 내외의 인증을 부여하고, 기관의 대외적 홍보 등에 인증 로고 활용 가능⁷⁾

7) 인증 수여와 관련하여 살펴본 타 제도의 인증 기간은 다음과 같음. 네 개 기관의 인증 기간 평균은 4.25년으로 이를 참고한다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인증 기간을 5년 내외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구분	기간
직업능력개발 우수 훈련기관 인증 기간	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간	3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기간	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간	4년



직업능력개발 우수 훈련기관
인증 마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마크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마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마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서 및 인증패

- 최우수 1개 기관 및 유형별 최우수 기관에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 표창 수여

○ 인센티브 부여

- 평가주기 조정: 우수 인증기관의 경우, 평가 주기 조정
※ [부록] 자료 확인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는 최초 심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기적 심사로 재심사 제도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음.

구분	동일형	확대형	축소형
내용	최초 심사와 동일	최초 심사보다 추가	최초 심사보다 축소
방법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시행	최초 심사제도 외의 추가 내용을 확인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만 확인

□ 동일형

- 동일형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정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재심사 때마다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짐.
- 동일형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심사 대비를 할 수 있음.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준비하면서 기관이 교육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변화에 따라 심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 - 동일한 항목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바뀌지 않는 부분(예: 시설물이나 행정실 등의 교육환경)까지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불만 등이 야기될 수 있음.

□ 확대형

- 확대형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보다 항목이 1~2가지 더 추가되어 최초 심사 외의 내용을 확인하는 심사로 이루어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관이 운영 시 더욱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교육성과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 - 교원 양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심사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최초 심사를 통해 승인되었던 기관의 탈락 위험성이 발생함. - 이에 따른 교원 양성 제도의 위축 및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는 행정적 절차만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평가의 실용성(효율성)이 부족함. - 학생의 수요가 적은 인문계 학과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학과 폐과 또는 축소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의 선도적 기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중소 이하 규모인 양성기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어교육의 규모 축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음.

□ 축소형

- 축소형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보다 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심사로 일부 영역(최초 심사와 다르게 바

뛰거나 추가된 내용)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축소형에서는 최초 심사의 내용이 잘 유지되고, 부분적인 추가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운영 자체의 편의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준 중 보다 핵심적인 기준에 집중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심사를 받는 기관의 심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많은 기관의 ‘효율성+수월성’을 높이는 부분으로서, 향후 기관 심사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유인책이 될 것으로 추측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심사 이후 각 기관의 사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심사내용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최초 심사 제도로 세 개의 안(1안, 2안, 3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에 따라 재심사 평가 기준은 ‘동일형, 축소형, 확대형’으로 달리 설정될 수 있기에 현재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안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재심사 제도의 정착화 이전 과도기의 제도 운영 방안

○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 재심사 제도의 도입 시 현재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장 시급하며 실제 재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제도 도입을 위한 대표 기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정량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개요
 - 대상: 최초 심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여 재심사 제도의 시범 운영
 - 절차: 1차 시범 운영 → 2차 본격 도입 후 → 인정 기준 점수 산출(시범 운영 후, 재심사 주기 및 인정 기준 점수 등을 확정함.)
- 장점
 - 재심사 제도에 대한 실질적 검증 가능
 - 기준의 정량적 평균 점수 도출의 용이함.
- 기타 논의 사항
 - 시범 적용 횟수, 시범 적용 기관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재)심사 제도 대상의 조건 마련
예) 재학생 20명 미만 기관 신청 제외 등

○ 제도 도입 후의 과도기 운영

- 재심사 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에 어떻게 재심사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재심사 제도 정착화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기 심사를 받았던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대안	장점	단점
<p>개편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만 신규 개설 인정, 불포함 교과목은 재심사 전까지 신규 개설 금지</p>	<p>-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적용</p>	<p>- 해당 내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지침 필요</p>

- 신규 심사 예정 양성기관은 신규 심사제도에 따라 진행

○ 재심사 제도의 시행 주기

- 재심사 제도의 주기적 시행을 위한 시기 설정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음.
- 재심사 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하여 주기 설정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4년~5년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제안함.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우선 대학교 학부과정의 경우, 4년 주기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4년 이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나 5년을 초과할 경우, 본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Ⅲ. 공청회 및 자문

1. 중간보고회 자문

- 중간보고회 일정: 2021.7.7.(수) 14시~18시
- 운영 방법: 오프라인(국립국어원 1층 대강당)
- 중간보고회 자문 의견 및 그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음.

1) 평가 판정 유형

- 이 연구에서는 재심사 제도의 기본 틀로 양성기관 인증평가(학점은행제 제외)를 제시하고, 평가 판정 유형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있음. 인증 기관의 경우에 일정 점수 이상을 모두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비율 이상의 상위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인지 궁금함. 또한 조건부인증 기관의 경우에 재심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함.

- 인증평가의 판정 유형은 해당 기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과 관련됨. ‘불인증’ 판정을 받은 양성기관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불인증’ 판정 이후 재학생 및 신입생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절차가 궁금함. 또한, ‘불인증’ 판정 기관이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떠한지, 그리고 재인증을 받게 되면, 그 사이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격증 발급 권한을 소급하여 갖게 되는지 궁금함.

⇒ (답변) 중간보고회 자료에서는 판정 유형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두고 있으나 중간보고회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 결과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세분화할 계획임. 또한 상위 기관에 대한 추가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조건부인증 기관의 경우는 불이익보다는 보편적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미흡한 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 기간을 줄 예정임. 불인증 판정을 받은 기관 소속 학습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음.

⇒ (최종 반영 여부)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충족, 미충족-보완요청) 중 1개 부여

- A: (우수) 인증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게시, 인증마크
- B: (충족) 통과
- C: (미충족) ‘컨설팅’ 의무화 및 1년 뒤⁸⁾ 재평가 실시

8) 유사사례 제도를 살펴보면,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짐. 미충족 등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컨설팅을 통한 재기회 부여, 폐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컨설팅 조치 후에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을 시에는 심사 신청 기간 유예 등을 통해 재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내용은 유사사례 제도를 참고하였음. 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경우, 역량진단 등급에 따라 후속 조치(A 등급: 부총리 표창, B 등급: 현행 유지, C 등급: 양성정원 30% 감축, D 등급: 양성정원 50% 감축, E 등급: 폐지)가 결정됨. 다만, 교육대학원(재교육)은 정원 감축폐지를 미 실시 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가 따름.

등급	기준(1,000점 만점)	후속조치
A	800점 이상	부총리 표창, 요청 시 컨설팅 제공
B	700점 이상~	현행 유지, 요청 시 컨설팅 제공
C	600점 이상~	양성정원 30% 감축, 컨설팅 필수 제공
D	500점 이상~	양성정원 50% 감축, 컨설팅 필수 제공
E	500점 미만	폐지

②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경우, 판정유형 및 인증기간은 ‘인증(5년), 인증(3년), 인증불가, 한시적 인증’으로 나뉨.

반영전	반영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우수, 충족,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조건부인증의 용어보다는 우수와 충족의 용어를 취함 - 불인증 대신, 미충족으로 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임 	

2) 유사사례 분석 관련

중간보고서 10쪽 이하에서 연구진이 수행한 유사 자격 제도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기관과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기관과의 비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특히 사회복지사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함.

- ⇒ (답변)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의 경우, 재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음.
- ⇒ (최종 반영 여부) 유사 사례 요약 시 1) 교원 양성기관, 2) 간호교육 인증평가, 3) 한국공학 교육인증, 4) 공인 노

판정 유형	판정 기준	인증기간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 (졸업생 배출 전 : 1년)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년 (졸업생 배출 전 : 1년)
인증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음)	1년

무사 보수교육기관, 5)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기관, 6) 보건교육사 양성기관, 7)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의 사례를 정리 후, 유사 자격 제도 1) 2급 문화예술사 교육기관 지정, 2)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3) 한국공학 교육인증 제도와 비교 분석한 내용을 넣었음.

3) 설문조사 관련

연구진에서 실시한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러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조금 더 체계화, 풍부화 되고, 그 규모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램. 이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비중, 척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최소 이수 학점과 이수 영역 조정에 대한 조사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 (답변) 최소 이수 학점과 이수 영역 조정에 대한 조사는 연구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이며, 본 설문은 기관별 설문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 조사 성격의 설문이므로 기관 대상 설문 문항 구성 시 참고하겠음.
- ⇒ (최종 반영 여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음.

4) 교원자격심사 권한 위임 관련

교원자격심사 권한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련 업무 내용 이해도’ (61%)와 ‘신청 서류 접수 확인 및 서류 수합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 안내’ (30%)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관련 업무 지정 담당자’ (9%)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높은 비율을 보인 사항을 실제로 숙지하고 수행할 사람이 관련 업무 지정 담당자라는 점에서 해당 담당자의 지위와 업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해당 담당자는 특정 부서의 행정직원(조교가 아니어야 함) 중에 이 업무를 명시적으로 배정받은 사람이어야 하되, 필수 과목 이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과장(주임교수) 또는 전공교수의 검토(사정)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답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진도 동의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운영 현황 조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음.
- ⇒ (최종 반영 여부) 심사제도 기준안 마련 시 3안에 ‘3. 교육환경 - 3.2.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 3.2.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지표를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한 부분을 넣었음.

5) 교원자격심사 권한 위임 관련

연구진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경우는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국립국어원의 개인 심사를 유지하되 서류의 접수와 1차 확인을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단체 심사 신청’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심사 과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연구진이 우려한 1차 확인 절차의 문제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보임. 그 문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 하나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에 기인함. 이런 경우에 수강생이 단체 심사 신청을 할 기관을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하여 책임을 지고자 할지 의문임.

⇒ (답변) ‘단체 심사 신청’ 방안은 연구발주기관의 요청 사항으로 본 사업의 세부 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단체 심사 신청 안’ 마련 시 이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최종 반영 여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단체 접수 방안 도입’에 대한 두 가지 질문(단체 접수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체 접수 기관 선택)을 넣어 해당 내용에 대한 운영 기관의 생각을 확인하였음.

설문 7.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신청 시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기관이 수합하여 단체 접수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

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신청 시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기관이 수합하여 단체 접수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한 곳 이상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했을 시 신청 방법’ 과 ‘신청 서류 접수 확인 및 서류 수합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 안내’ 가 각각 31.43%의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필수 과목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운영기관의 예비 검토 여부’ 와 ‘신청자 신청서류 등에 대한 운영기관의 보관 여부’ 가 각각 17.14%를 차지함. 마지막으로 ‘기타’ 는 2.86%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단체접수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이 있음.

설문 8. 신청자가 여러 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어떤 기관에서 단체 접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청자가 여러 기관 학점 취득 시 단체 접수해야 할 기관을 묻는 문항으로, ‘최다 학점 이수 기관’ 이 31.25%, ‘신청자가 원하는 기관’ 이 25%의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최종 과목 이수 기관’, ‘실습 과목 이수 기관’ 이 각각 18.75%를 차지함. ‘기타’ 는 6.25%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단체접수 방식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이 있음.

2. 공청회 의견

- 공청회 개최 기간: 2021.11.15.(월) 09:00 ~ 11.19.(금) 18:00
- 운영 방법: 온라인(국립국어원 유튜브 채널)
- 의견 제출: 총 13개(6개 대학교 및 1개 원격평생교육원 소속 13인)
- 제시한 의견에 따른 반영 여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내용	
1	의견	<p>교강사진의 전문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교원 양성 초창기부터 학위과정(대학원과정)에 한국어교육과정을 세우고 강의해온 전임교원의 경우 그 동안의 강의 경력을 교강사 자격 요건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교육 교강사 자격 요건(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한국어 강의 경력 2,000시간 이상,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대학(원)에서 10년 넘게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강의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적 단계로 이들의 강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 기준 중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원)</p>
	반영 여부	<p>⇒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는 운영 권고 사항(78-79쪽)으로 3영역 담당 전임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p>

연번	내용	
		<p>교원의 전문성 기준 마련 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음.</p> <p>■ 3영역 담당 전임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양성과정, 학점은행제에서의 3영역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경우 -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인 경우 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경우 <p>■ 3영역 담당 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양성과정, 학점은행제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
2	의견	<p>1. 정기적 재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심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기관에는 ‘인증기관’의 자격을 주고, 자격증 교부의 방식 또한 졸업/수료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재심사가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적 압박이 아니라 교육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입니다.</p> <p>2. 이를 위해서는 재심사 평가 기준이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평가는 행정적 처리의 엄정성보다는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차원</p>

연번	내용	
		<p>에서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p> <p>3. 재심사 방안은 1안, 2안, 3안이 나뉘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 3개 안 모두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피심사 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심사 평가의 실효성을 거두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대학교)</p>
	반영 여부	<p>⇒ 1. 졸업/수료와 동시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해당 내용의 도입에 대하여 준비 중임.</p> <p>2~3. 재심사 평가 기준 및 3개 안의 단계적 시행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팀에서는 절충안인 2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p>
3	의견	<p>심사 항목 중 3안에 제시된 ‘성과’ 지표는 각 기관별 교육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과 중심 평가는 교육 기관 평가에 매우 부적절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한 사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사이버대학교)</p>
	반영 여부	<p>⇒ 현재 제시한 3개의 안은 양성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된 안으로 성과 지표의 모든 안을 활용하는 것은 3안뿐임. 3안은 가장 강화된 성격의 안이라 할 수 있으며 성과 중심 평가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양성기관의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 최소한 강의 만족도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p>

연번	내용	
4	의견	<p>(인사말 생략)</p> <p>1.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에서 실습과목의 경우,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 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협약을 맺고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몇몇 기관의 경우 실습 담당 교수의 전문성이나 실습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u>협약에 의해 실습 교과목만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한 심사(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u> (이때, 실습담당교수의 전문성, 참관수업을 하는 강사의 전문성, 교육 환경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2. 3안의 <u>‘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u>의 경우, <u>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1안과 2안에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u></p> <p>3. 참관수업 현장에서 기관은 예비한국어선생님들에게 실습비를 받고, 참관수업을 하는 강사에게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고용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기관에 항의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3.2.2.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u> 지표 정도에서(또는 2.교원 강사 영역 등에서) 세부 설명으로 <u>‘전임교원/강사의 강의환경 및 대우의 적절성(가칭)’</u> 등과 같이 <u>강사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u>을 넣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연번	내용	
		<p>4. 인증 수여는 예비한국어선생님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u>‘최우수 1개 기관 및 유형별 최우수 기관에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수여’</u>의 경우 <u>몇 년마다 수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기관에서 또는 특정 지역에서 독점할 가능성이</u>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학교)</p>
	반영 여부	<p>⇒ 1. 협약에 의한 실습 교과목만 담당하는 (외부) 기관의 (재)심사는 (재)심사 대상 기관에서 다른 교과목 심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실습 교과목 운영 기관에 심사를 요구할 시 실습 교과목 운영을 꺼려할 수 있음.)</p> <p>2. 설문조사 결과 및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2안에도 ‘실습 지도의 충실성’ 항목을 포함하고자 함. (대신, 2.1.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지표를 삭제함.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지표 확인만으로도 교원 및 강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됨.)</p> <p>3.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님.</p> <p>4. 평가 지표 및 척도를 조정하여 인증 기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안)을 정리하였음.</p>
5	의견	<p>1. 한국어교육은 국어교육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u>국어교육의 자격 기준에 합당하면 한국어교육 자격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u> 보아야 합니다.</p> <p>2. 이번 공청회에서는 세부 심사 항목이 무엇인</p>

연번	내용	
		<p>지, 추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에 심사 항목과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합니다. 특히,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적합성 판단에서 연구 실적의 연구 논문 주제 인정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교)</p>
	반영 여부	<p>⇒ 1. 한국어교육 자격 기준은 분명히 국어교육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음. 2. 심사 항목과 심사 방식, 전문가로서의 적합성 판단 등에 대한 내용은 세부 지표로 제시하고자 함.</p>
6	의견	<p>재심사는 연구진에서 언급했듯이 좋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소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확대안을 기준으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안내, 그리고 재심사 진행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재심사 제도 연구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심사 제도 관련 기존 연구 사업이 있었음에도 재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p>
	반영 여부	<p>⇒ 현재 제시된 3개 안 중 2안이 절충된 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명확한 기준은 세부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재심사 진행 방식 및 시기 등에 대한 부분은 시범운영 단계 이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p>
7	의견	<p>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이후,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와 관련된 재심사는 필요해 보</p>

연번	내용	
		<p>입니다.</p> <p>2. 다만, 재심사가 ‘교육 역량을 갖춘 한국어교원의 배출’에 목적을 둔다면, 교육과정의 단순한 운영 점검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점검도 고려해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현행 안을 강화한 1, 2, 3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교)</p>
	반영 여부	⇒ 현재 도출된 안을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질적인 부분의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입니다.
8	의견	<p>1. 학위과정의 경우 현행 심사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초 심사보다 간소화된 수준으로 재심사를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심사를 강화할 경우 행정 처리 업무의 가중이 예상됩니다.</p> <p>2. 한국어교원 양성 초창기부터 학위과정(대학원과정)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강의해 온 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어교육 교강사 자격 요건(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한국어 강의 경력 2,000시간 이상,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대학(원)에서 10년 넘게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강의해 온 분들도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과도기적 단계로 이들의 강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 기준 중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적합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p>

연번	내용	
		<p>3.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한국어양성기관(온라인학점제 등)에서 배출한 한국어교원 증가로 인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희소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교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3급 자격증 소지자와 학점은행제의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상당 부분은 다시 학위과정에 진학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학교)</p>
	반영 여부	<p>⇒ 1.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기에 현행 수준의 유지 및 간소화된 수준보다 조금 강화된 수준의 심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p> <p>2.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3.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다를 내용이 아님.</p>
9	의견	<p>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p>
	반영 여부	<p>⇒ 심사제도 재정비 이후, 과도기적 단계에서 기관별 교육 자료 등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 내용은 국립국어원과의 논의 및 협조가 필요함.</p>
10	의견	<p>‘학점은행제는 별도의 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점은행제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거나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점은행</p>

연번	내용	
		<p>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국어원의 교과목 심사 및 개인 자격 심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승혜, 2017)’ 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심사 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의 재심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학점은행제)</p>
	반영 여부	<p>⇒ 과도기의 재심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p>
11	의견	<p>(인사말 생략)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를 확대한다면 제기되는 문제로 양성기관의 부담감이 가중되며 기관의 폐강 과목 증가로 학습자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심사 신청’ 방안은 학습자들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방지할 수 있겠으나, 운영기관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며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소수의 학습자로 인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점은행제)</p>
	반영 여부	<p>⇒ 현 시점에서는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정비(개선)를 통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p> <p>⇒ 학점은행제 운영 방안의 단체 심사 신청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하였음.</p>
12	의견	<p>연구 내용 중에 보면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이 ” 교원 양성기관 “에 대한 심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가 있습니다. 이미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단기양성과정 세</p>

연번	내용	
		<p>기관 모두 “적절하다” 라고 응답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재심사 제도의 수준을 최초 심사 제도보다 간소화된 수준의 응답이 주를 이룹니다. 재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 양성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기관의 검증은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u>양성 기관마다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심사”를 잘 마련</u>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점은행제)</p>
	반영 여부	<p>⇒ 현 시점에서는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재)심사 제도의 정비(개선)를 통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관 유형에 따른 표준화된 심사(안)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함.</p> <p>⇒ 양성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청회 전 제시했던 지표 중 일부를 수정하였음. (4.2. 영역의 경우,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는 대학교 학부 과정에는 적용 타당하나, 대학원, 학점은행제, 단기 양성과정의 경우 적합하지 않으므로 운영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음.)</p>
13	의견	<p>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만약 필수 교과목들이 지정되고 교육기관 심사 제도가 정착된다면, 이는 모든 교육 기관이 최소한의 동질성과 수준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졸업 이후에 개개인의 예비교원이 개인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u>중등교원 자격증처럼 졸업과 동시</u></p>

연번	내용	
		<p>에 교원자격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국립국어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견을 꼭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정은 행제)</p>
	반영 여부	<p>⇒ 졸업/수료와 동시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해당 내용의 도입에 대하여 준비 중임.</p>

※ 공청회 의견 중 인사말 등의 내용은 생략하였음.

3. 최종보고회 자문

- 날짜 및 시간: 2021.12.13.(월) 15:00-17:00
- 운영 방법: 오프라인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 회의 안건
 -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안 검토
 - 양성기관 재심사 기준 및 절차안 검토
 -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여부의 적절성 등
 - 기타 연구 보완에 필요한 사항 등 논의

3.1. ‘자문위원 1’ 주요 의견

- 대다수의 지표에서 진단 척도는 A, B, C, D, F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85% 미만인 경우, F에 해당됨. 그런데 통상적인 점수 환산은 A는 90이상, B는 80 이상, C는 70 이상, D는 60 이상이며 F는 60 미만임. 따라서 85%를 F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좀 낮추어 조정되면 좋겠음.

⇒ (답변) 현재 안은 연구진의 제안으로서 제시된 수치는
시범 적용 후에 평균치를 적용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영역별 개설 교과목 최초심사 시 심사 받은 경우에 재심사 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교과목 질 제고를 위해 재심사 때에도 교과목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답변) 재심사 시 무조건적인 면제 처리보다는 교과목 운영에 대한 기본 확인 작업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청회 의견 중 교원확보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확보율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답변) 심사 지표에 교원확보율을 포함하였음.

3.2. ‘자문위원 2’ 주요 의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연구가 몇 차례 이어져 왔으므로 이제는 연구 발주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 결정하고, 이 제도를 추진(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초심사’, ‘재심사’에 대한 용어 정리 필요: ‘최초심사’는 신규 진입 승인하는 것처럼 느껴짐. 주기적으로 똑같은 심사가 적용된다면 용어 구분이 필요할까?

⇒ (답변) 본 연구 안에서는 처음과 다시 받는 심사의 구분을 위하여 최초 심사와 재심사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최초 심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지와 관련하여 처음 자격을 부여 받는 심사로 기존에는 최초 심사 한 번만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초 심사에 통과되면 이후의 심사는 없었음. (신규 교과목 편성 시 해당 교과

목 내용만 심사 받음) 최초 심사는 곧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 첫 번째 심사를 의미함. 현행 재심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심사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초 심사 이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심사를 의미함. 향후, 변경된 심사 제도가 도입 및 적용이 된다면 용어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것임.

○ 심사 지표에서 ‘확인’ 만 하는 평가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 여부를 생각해야 함.

⇒ (답변) 정량 지표로 확인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실제 운영의 적절성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증빙 자료 등으로 ‘확인’ 이 필요함.

○ 심사에서 ‘확대/강화’ (안)이 있는데, 기관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답변) 연구진도 이 의견에 동의함을 전제로, 지표 내용 및 평가 안을 제안하였음.

3.3. ‘국립국어원’ 의견

○ ‘실습 지도의 충실성’ 이 P/F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

⇒ (답변) 실습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실습지도 교수명단, 강의 참관 및 실습 참여자 명단, 실습 계획서 및 시간표, 실습 전, 중, 후 지도 관련 자료 등)를 확인해 잘 지키며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

○ 신규 기관, 최초심사에 대한 용어: 신규 기관은 처음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편입하는 기관을 의미함.

○ 평가 주기

⇒ (답변) 학부 8년, 교육대학원 5년, 학점은행제 3년(국가 평생진흥원 교과목 평가 주기와 동일하도록 진행해야 관리가 수월하다고 생각함.) 다만, 재심사 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하여 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이며 가능한 한 심사 제도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고민할 것임.

○ 교과목별 평가: 수시로 또는 주기별

⇒ (답변) 중고등 교원 교과목 평가 시 필수 과목은 바뀌지 않음.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규교과목 평가에 대한 주기를 신설교과목이 생겼을 때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고려함.

○ 재심사제도 시행: 법이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시행 가능한 평가 여부

⇒ (답변) 신규 진입한 기관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인증기관 시상 및 인증서 등 의미 있다고 봄.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인증기관 및 인증서 등의 내용을 추가 바람.

⇒ (답변) 추가 기술하였음.

○ 보고서에 과도기 운영에 대한 설명의 추가 기술을 요청함.

3.4.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 최초 심사는 ‘2안’, 재심사는 ‘동일안’ 으로 제안하는데 대한 근거 배경 설명이 추가될 필요 있음.

⇒ (답변) 추가 기술하였음.

4. 최종 자문

-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전문가 4인에게 최종 자문을 요청함.
- 최종 자문 의견은 다음과 같음.

4.1. 자문위원 A

이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과 관련하여 논의점이라고 판단되어 오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어 교원은 다양한 유사 국가 자격 중 교육부 산하 교원 자격과 유사하다는 점(교육 과정, 교육 목표, 교육 대상, 교육 의의, 전인적 가치, 국가 신인도 및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볼 때)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걸맞은 업정성 및 구조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점

2.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 행위가 초중등 교원의 그것과 유사한 가치와 자격 및 전문성을 가졌음이, 해당 영역 종사자 및 유관자 등에 의해 폭 넓게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초중등 교원 자격 제도의 구조와 조건, 인증, 심사, 재심사, 보수교육 등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3.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원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4. 대학 학부 과정의 전공, 대학원 연구 과정 전공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교원에게 석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

5. 교육 과정 내 영역별 전문성의 범주나 영역이 상당히 변별되는 바가 있는 데에 비해 그 각각의 영역 담당 교원에 대한 공통성과 변별성에 대한 실제적 기준 및 관리가 부족하거나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6. 교육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엄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교육 기관에 대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나 행정적으로나 한국어교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그 공적 인정 및 신인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즉 정부 내 교원 관리 담당 기관이 개인별 개별적 자격 부여의 방식으로 교원 자격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

7.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등 교육기관 입학 자원과 교육 기관 자체의 질적 양적 차이가 자격 제도 운영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일종의 하향 일원화된 대상화가 이루어져 있는 현실

8. 일정 정도 이상의 국가 자격을 다루는 전공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또는 인증 시스템이 한국어교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어교원 자격만의 유표적 차별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

이처럼 한국어 교육 전문 영역에서 공공연히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던 화두들이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지거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나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오던 문제 내지 제안점이 빠짐없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관련 유관자 및 기관에 대한 설문 내용 구성 역시 위에서 언급한 주요 화두에 대해 연구진이 이해하고 그 기반 하에 구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법령 및 규범과 관행, 이미 이루어져 있는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제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2. 자문위원 B

-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재심사 제도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예비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와 관련된 기초 문헌 연구와 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 대상의 설문 조사 등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양성기관 심사 기준과 재심사 제도의 몇 가지 대안을 차별적으로 잘 제시하였습니다.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본 연구의 내용과의 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내용 구성의 적절성

- 본 연구는 크게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2)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의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와 자료 조사,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특히 재심사 제도와 관련된 유관 기관과 인적 자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

- 이러한 연구 내용의 구성과 연구 방법의 적용은 적절하다고 보나, 한두 가지 아쉬운 부분도 보임.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의 재심사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었다고 봄.
-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를 조사한 부분에서 국내의 유사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보이는데, 특정 자격증 제도는 본 연구의 성격과 거리가 있어 보임.
- 국내의 사례 외에 외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국내의 유사한 자격증 제도를 살펴보는 것만큼 국외의 유사한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학 졸업이나 기관 프로그램 이수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함. 즉, 그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인증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조사해야 함.

2. 연구 내용의 충실성과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어교

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조사한 부분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을 조사한 부분은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봄.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현황은 각 기관의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문헌 조사 외에 설문 방법을 사용하여 면밀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분석 자료는 재심사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봄.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인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과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은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하여 조사된 유사 제도는 그 내용과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 조사의 내용은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과 기준, 그리고 심사 절차,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시사점을 제공함.
- 개인용 설문 조사, 기관별 설문 조사, 예비 한국어교원 설문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 기반한 최초 심사 기준 정비와 재심사 제도 방안은 매우 정치하게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한 교육기관의 유형, 학위과정의 유형, 수업 방식 등의 다양한 변인에 기반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세 가지 유형의 심사 기준 방안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화된 방안이라고 사료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방안, 즉, 현행 체제 유지, 확대 유지, 축소 유지에 대해서는 각 방안의 장, 단점을 정치하게 기술하고 있음.

- 광범위한 연구 내용과 자료의 충실함은 본 연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나 연구 주제의 초점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음. 예를 들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의 위임 방안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변인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유형의 심사 기준을 보면 교육기관의 유형이나 학위과정의 유형, 수업 방식 등의 변인이 어떻게 고려되어 심사 기준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의 기술이 부족해 보임. 특히, 세 가지 유형의 세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였으나, 각 유형 별 심사 기준 항목의 차이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 재심사 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방안은 잘 정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일안, 확대안, 축소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세 가지 방안이 앞서 언급한 심사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어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음.
- 본 보고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주관 기관이 선택 가능하도록 재심사 제도(안)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말은 교육기관이나 학위과정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재심사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4.3. 자문위원 C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재심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초 심사 제도와 재심사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려 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심사 제도 방안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 효과를 위해 연구 수행 방법에 있어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 노력하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안)은 실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안)에서 교원 양성 기관과 발급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되 자격증 발급을 교원 양성 기관에 위임하고 또 학생들이 졸업 시기에 맞추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자격증을 받기 위한 졸업생 개인의 행정적 노력을 덜어줄 수 있고 또 정부 파견 교원 시기가 연초라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대학별 개설 교과목의 편차가 큰 점과 교원의 전공 분야 편차가 큰 점 등은 향후 제도 방안을 마련할 때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과목 개설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지만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반드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없는지, 그리고 정년

트랙 혹은 비정년트랙에서라도 3명역 전공 교원을 반드시 채용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3.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에 있어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개인 자격 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입학 시기를 고려하여 재심사를 받지 않은 시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이후 입학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조건부로 예를 들어 재심사를 다시 받게 하거나 부적합 판정 사유를 해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심사를 통과하거나 부적합 판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은 평가를 통과한 기관으로 하고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평가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방안’에서 연구진에서는 2안을 우선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 기관에 필요 이상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4. 성과 부분에 ‘강의 만족도’ 이외에 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졸업생 취업률’을 하나의 항목으로 두는 것도 해당 기관 교육의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4.4. 자문위원 D

그동안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한국어교육 양성기관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과업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히 타당하고 활용 가능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인증제를 마련해 대학, 대학원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 내용 중 추가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25~26쪽의 학위과정 운영 현황 조사 결과로 제시된 표에 제시된 수치가 개별 양성기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양성기관이 속해 있는 상위기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1개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혹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등에서 다수의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양성기관의 수를 제시하고, 이를 내용에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27쪽에 지역 대표 기관 학위과정별 교과목 운영 현황으로 학위과정 운영 기관 중 5개 지역의 1개 기관을 중심으로 교과목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1) 지역 대표 기관 선정 기준이 제시되면 좋겠다.

2)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한 조사로, 실제 학기별 운영 자료와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5개 기관 조사라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현재는 운영 교과목 수와 영역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교과목이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47쪽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서류(안)에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6급 증명서'를 추가해야 한다.

4. 재심사제도에서

1)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재심사 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적 업무 효율을 고려할 때 이원화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재심사 방법도 최초 심사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통한 심사로 제안되었는데, 서류 심사만으로는 서류로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과 실제 교육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서류 심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5. 116쪽에 제시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기준의 정비안 표에 나타난 평가 지표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1영역(교육과정)과 2영역(교원 강사)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기본이며 핵심 내용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이나 3(교육환경)과 4(성과)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의 적절성이나 타당성과는 거리가 있어 평가 지표로 삼시에는

무리가 있다. 정비안에 나타난 표는 교육부의 평가 지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의 기관 평가와 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는 평가 목적과 내용이 다른 만큼 평가지표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6.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 전공 전임교원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도 운영 권고 사항(‘-을 권고한다.’)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선(안)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 수준의 교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방안(안)에 전임교원 중 반드시 한국어교육학 전공자 혹은 연구 실적 기준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4.5. 최종 자문에 따른 의견 개진

○ 최종 자문 의견 중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에 ‘반영’과 ‘반영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정리함.

○ 반영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변인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각 유형 별 심사 기준 항목의 차이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 근거를 추가함.

- 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일안, 확대안, 축소안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이 심사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어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음.

→ 의견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추가함.

- 47쪽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서류(안)에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6급 증명서’를 추가해야 함.

→ 해당 내용 추가함.

-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재심사 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적 업무 효율을 고려할 때 이원화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재)심사 제도는 행정적 업무 처리의 효율성 확보보다는 한국어교육의 질적 제고를 우선 목적으로 하여 등급별 재심사 주기의 설정 등을 제안함.

○ 반영의 어려움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최초 심사 기준 정비 방안’에서 4. 성과 부분에 ‘강의 만족도’ 이외에 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졸업생 취업률’을 하나의 항목으로 두는 것도 해당 기관 교육의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 교육 성과 영역에서 ‘강의 만족도’, ‘재학생 대비 자격증 취득률’이 두 개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교육 성과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함.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설문 응답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 졸업생 취업률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현실적으로 이 안을 반영하기에는 부담과 어려움이 따름.

- 재심사 방법도 최초 심사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통한 심사로 제안되었는데, 서류 심사만으로는 서류로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과 실제 교육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함. 따라서 서류 심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서류 심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현장심사이지만 현장심사를 도입하는 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시간이 필요함. 이에, 기관별 설문조사 시 (재)심사 제도의 평가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서면 평가’를 가장 선호하였음.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시 어떤 형태의 평가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① 서면 평가	30(47.62%)	12(75)	12(63.16)
② 현장 방문 평가	3(4.76%)	2(12.5)	1(5.26)
③ 서면 평가 + 현장 방문 평가	27(42.86%)	2(12.5)	5(26.32)
④ 기타	3(4.76%)	0(0)	1(5.26)
합계	63(100%)	16(100%)	19(100%)

⇒ 세 기관 모두 ‘서면 평가’ 방식을 선호하였음.

- 평가 지표 3(교육환경)과 4(성과)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의 적절성이나 타당성과는 거리가 있음. 정비안에 나타난 표는 교육부의 평가 지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의 기관 평가와 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는 평가 목적과 내용이 다른 만큼 평가지표 구성이 달라져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관련 기관별 설문조사에서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학위과정(대학, 대학원)은 초중등교원을 뽑았으며(60.32%) 학점은행제의 경우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이어 두 번째로 초중등교원을 뽑았음(25.0%). 이로 미루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마련 시 유사사례로 초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기관평가인증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목적을 확인하였을 때,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므로 참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참고]

1) 기관평가인증(한국대학평가원)

▶ 정의: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관 운영 전반임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 인증의 획득: 대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은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함.

2)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한국교육개발원)

-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기본 방향: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의 질 제고,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양성규모 적정화, 교원양성기관의 자기발전 유도 및 교직원희망자에게 참고자료 제공

-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도 운영 권고 사항(-을 권고한다.)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선(안)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 수준의 교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방안(안)에 전임교원 중 반드시 한국어교육학 전공자 혹은 연구 실적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바람.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 제시된 한국어교육 전공 전임교원에 대한 내용을 ‘권고 → 의무’로 하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함. 또한,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포함하는 내용에는 크게 동의함. 본 연구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교육학 전공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와 연구의 방향성을 가짐. 따라서 평가 지표의 내용에도 포함하여 제안하고 있음. 다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마련하는 것은 본 연구진의 연구가 아니므로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움.

5. 법률 자문

- 심사 제도 개선(최초 심사, 재심사)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자문위원의 자문 의견은 다음과 같음.

5.1. 법률자문위원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I. 위임입법의 측면

법률인 국어기본법에 정하는 내용을 하위법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서 새로운 심사 기준 영역을 추가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또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만을 개정하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II.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경우

1.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심사에 기존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을 심사했지만, 새로운 안에서

는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한다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경우

추가하는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를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 정도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전면 개정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과 같은 새로운 [별표]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는 부가적인 내용은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소폭 개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대학 등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 확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 및 이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를 전면 개정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Ⅲ.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만을 개정하는 가능성

1.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재심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방법: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재심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재심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재심사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가능성: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재심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기술상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

정만으로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4호,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이를 정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IV. 결론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새로운 심사 기준(교육환경,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교육환경,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에 대한 내용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정도의 자세한 내용이 제13조의 2 개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내용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3. “교육환경,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 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를 최소한으로 개정하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교육환경,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두 경우 모두 필요한 내용의 별표와 서식 내용을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5.2. 법률자문위원 B(법무법인 변호사)

□ 질의개요

1.

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심사 기준 항목을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외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나.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지와 관련하여 처음 받는 한 번의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기존 양성기관에 대한 더 이상의 심사는 없었으나, 향후 주기적으로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를 반복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다. 그 심사 기준은 기존 방식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적 등의 4개 영역과 항목, 지표 등을 확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의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유지하면서, 위에

서 언급한 심사제도를 변경, 개선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최초 심사의 경우, 심사 항목이 달라진다면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다. 일정 주기(5년 등)로 양성기관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할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라. 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가장 최소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예: 자구 수정, 항 추가 등) 등

② 검토의견

1.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조항을 두면서 그 내용에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에 대한 적합여부의 확인은 [별표 1]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조항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적 등의 4개 영역과 항목, 지표 등을 확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적 등에 대한 적합여부의 확인을 ...” 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유지한 채 위 4개 영역과 항목, 지표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심사

항목이 달라질 때마다 그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정주기(5년 등)로 양성기관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매년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 개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에 그 시행령의 조항을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려는 기관은..별표 1(또는 2)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 등으로 규정하여 변경하려는 심사항목의 내용을 [별표]에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그 [별표]를 매년 수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조항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별표]의 수정 작업 역시 시행령 개정이므로 심사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시행령의 개정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지만, 해당 조문 전체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심사항목 변경 시 적용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③ 본 법률사무소 종합검토 의견

1.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조항에서 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적 등의 4개 영역과 항목, 지표 등을

확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일정 주기(5년 등)로 양성기관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할 경우도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지만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항을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변경하려는 심사항목의 내용을 [별표]에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그 [별표]를 매번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심사항목 변경 시 적용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5.3. 법률자문에 따른 의견 개진

○ 법률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A안(대폭 개정)

○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A안은 기존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추가하고, 별표 3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폭 개정’에 해당함.

○ 이 경우, 심사 기준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정도의 분량으로 매우 자세히 기술할 것을 제안함.

○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적인 내용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함.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대학등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 이라 한다)은 별표1 → 별표3 별표 3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 → 교육과정 등이 (또는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등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습 교과목 운영
2. 교원강사: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
3. 교육환경: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4. 성과: 강의 만족도

등의 자세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함.

[별표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기준

영역	항목	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 운영 교수의 전공 적합성
	1.2. 실습 교과목 운영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실습 지도의 충실성
2. 교원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및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2. 전임교원/강사의 전문성	2.2.1. 영역별 전공 일치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율
3. 교육환경	3.1.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3.1.1.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4. 성과	4.1. 교육 성과	4.1.1. 강의 만족도

※ [별표3]은 지면 관계상 한 번만 제시함.

2)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B안

-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B안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목을 바꾸고 제13조의3을 추가하여 심사 관련 내용을 따로 추가하여 제시함.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대학등

의 교육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및 성과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은 20XX년 XX월(심사 제도 개정 전)까지 신청한 대학등에 해당한다.

제13조의3(대학등의 심사) ① 대학등은 별표3에 따른 교육

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성과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은 최초 심사 이후,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C안(소폭 개정)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개정하는 방안임.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개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또 바뀔 수도 있는 지표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정리하였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대학등의~~

~~심사~~)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1~~ → ~~별표3~~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 이수확점 및 필수 이수시간~~ →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 ~~그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 연구진은 법률자문위원의 자문에 따른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A안, B안, C안 세 가지 중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개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C안을 제안하고자 함.

IV. 결론

1. 연구 결과 정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연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에 대한 분석
 -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현재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관련 설문조사 시행 및 분석
 - 설문 응답 기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운영기관 63곳,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 16곳,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19곳
-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 국내외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심사 제도 개선(최초 심사, 재심사) 관련 연구
-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련

-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운영 기관이 수합하여 단체 접수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에 대한 절차 마련 및 법률 검토
- 심사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및 분석
 - 사전조사(개인용): 53명 응답
 - 기관별 설문조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운영기관 63곳,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 16곳,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19곳 응답
 - 예비 한국어교원 설문조사: 120명 응답
- 한국어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 국내 한국어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 서면 인터뷰(8인)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정기 재심사 기준 마련
-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재심사 제도 도입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마련
- 법령 개정 관련 법적 사항 검토

2.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따른 심사 제도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함.
- 둘째, 새로운 (재)심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평가편람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각 기관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셋째, 새로운 심사 제도의 안정화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차원의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편람에 맞추어 심사보고서를 만든 다음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논의되어야 함.

[부록] 인센티브 부여 관련

1. 어린이집 등급 평정 방식

• (평가지표) 각 지표별 평가항목의 '총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총족(Y)' 또는 '미총족(N)'에 체크

평가항목 수	지표 평정		
	총족(Y) 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 이하
4	4개	2~3개	1개 이하
5	5개	3~4개	2개 이하
6	6개	3~5개	2개 이하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	------

•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등급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개선필요' 등급 부여

평가영역(지표 수)	영역 평정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우수' 지표 3개 이상		
3. 건강·안전(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4. 교직원(4)	'우수' 지표 3개 이상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	------

•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총족)	3년
B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2. 간호교육인증평가

1) 간호교육인증평가제란?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

2) 간호교육인증평가 목적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평가, 인증 절차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 운영 상황이 어떠한지,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는 평가항목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평가항목별로 평가 요소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과 ‘보완’ , ‘미충족’ 으로 구분함.

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1)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

2)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의 취지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제 구축·강화

3)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 인증지표: 체험처 성격 및 의지(3개 문항, 9점) / 체험처 환경 및 안전(3개 문항, 9점) /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4개 문항, 12점) 총 30점으로 구성
- 인증 기준: 총점(30점) 기준 심사점수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 10개 지표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4) 인증 진행 과정

1단계 신청서제출	2단계 서면심사 / 현장심사	3단계 권역별 심사	4단계 중앙 심사	5단계 인증기관 최종선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체험처는 꿈길(www.goongil.go.kr) 홈페이지에 체험처가 직접 신청 제출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1차 심사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진행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검수확인 후 2차 심사로 5개 권역별 인증심사 실시	3차 최종 인증위원회 심사로 후보군으로 선정된 진로체험기관 심사	교육부 및 꿈길 홈페이지 최종선정 기관 공고

5) 인증기관 혜택

-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기관 홍보 등 활용)

- 인증기관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사·학부모 대상 홍보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목적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 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20~' 23)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분야	세부 지표		분야	세부 지표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평가영역	전략 및 선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전략 및 인프라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의료보험 가입률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관리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어학연수생 지원 관리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입학·수료 관리의 적절성	
		유학생 상담률			
	성과	중도탈락률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 학위과정 인증기준 〉

분야	세부 지표	심사기준	신규 지표 여부	인증 기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1.5~2.5 미만*	기 존	충족 필수**	
평 가 영 역	전략 및 선발	1.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조직·예산)	정성	강 화	3개 중 2개 이상 충족
		2.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정성	강 화	
		3.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기 존	
	유학생 관리	1.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기 존	3개 중 2개 이상 충족
		2.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정성	기 존	
		3.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60% 이상	강 화	
	성과	1. 중도탈락률	6% 미만	기 존	3개 중 2개 이상 충족
		2.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	30%/40% 이상	강 화	
		3.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1건 이상/정성	강 화	

* (100명 미만) 2.5% 미만, (100~1,000명) 2% 미만, (1,000명 초과) 1.5% 미만 / 다만, 전문대학은 구간별 기준에 1%p 추가

* 3주기 내에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다만, 중도탈락률 기준 충족하는 경우 불법체류율 4% 미만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지표 변경 또는 삭제 가능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어학연수과정 인증기준 >

분야	세부 지표	심사기준	인증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율	8~10% 미만*	충족 필수**
전략 및 인프라	1.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정량/정성	3개 중 2개 이상 충족
	2.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3.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어학 연수생 관리	1.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3개 중 2개 이상 충족
	2.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3.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정성	

* (100명 미만) 10% 미만, (100~500명) 9% 미만, (500명 초과) 8% 미만

** 다만,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기준 충족한 대학은 불법체류율 15% 미만 기준 적용하되, 3주기 내에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기획·연구>

이보라미(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권진주(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박석준(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공동 연구원 김용경(경동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김용현(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교수)

문정현(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송금숙(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심지영(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지원(창신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이미향(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은지(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김세정(한남대), 김인경(고려대), 라경서(한밭대),

박현경(명지대), 이문원(배재대), 이수영(영남대),

전현숙(중부대), 정희연(배재대), 최성렬(전북대),

최유미((주) EF I.L.C)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인 쇄: 대선출판기획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